

1999年度
行政監査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財務建設委員會會議錄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被監査部署 都市管理局

日 時 1999年12月2日(木) 10時01分

場 所 財務建設委員會室

(10時01分 監査開始)

○委員長 吳弼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무건설위원회의 '99년도 종로구청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先輩 同僚 委員 여러분!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올 한해는 경제난으로 지역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새 천년에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도시개발에 주력하여 도심의 공간을 정비하고 6대 주거생활권 개발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교통시설을 신설 및 확장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이로 인하여 쾌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녹색도시로 만들어 생활환경 개선에 주력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혜와 슬기를 모아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여 심도있는 심사로 지난 안전사고 방지와 홍수 등 기상이변에 대처하여 재난을 극복하였듯이 도시기반을 구축하는 데 일조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의정활동이 새 천년을 설계하는데 튼튼한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받는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제5항 그

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에 규정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도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진술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국장이 공석이므로 선임과장인 주택과장이 그 직을 대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李宗哲 住宅課長이 대표로 선서하겠습니다. 참석하신 委員과 關係公務員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 起立)

○住宅課長 李宗哲 “宣誓. 본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都市管理局

地方土木事務官 李榮祐

都市計劃課長 張東祐

建築課長 李漢求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委員長 吳弼根 모두 자리에 앉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

(一同 着席)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李宗哲 住宅課長으로부터 소속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전임 이종우 도시관리국장께서 11월 30일 명예퇴직으로 인해서 제가 도시관리국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양해해 주신 吳弼根 委員長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도시관리국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住宅課長李宗哲입니다. 張東祐 도시계획과장입니다. 李漢求 建築課長입니다. 金乙震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도시관리국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보고드릴 업무로서는 '99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0년도 추진계획 보고가 되겠습니다.

중경하옵는 吳弼根 委員長님과 여러 委員님을 모시고 도시관리국소관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하여 우리 구의 지역발전과 생활수준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照)

都市管理局 業務報告

(都市管理局)

(이상 1건 附錄에 실음)

○委員長 吳弼根 李宗哲 住宅課長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金乙震 공원녹지과장님은 근무하신 지 오래되신 것 같은데 새로 부임한 과장님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부임한 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겠다 이러한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감사 준비를 소홀히 한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보충자료를 요구할 시는 신속히 자료를 제출해서 감사가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李炯述 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炯述 委員 李炯述 委員입니다. 종로구 관내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지금 16개 중에 5개소가 완료되었죠?

○住宅課長 李宗哲 예.

○李炯述 委員 주거환경개선지구 서울시 전체에 종로가 가장 비중이 크고 본 위원이 서울시에 가서도 여러 차례 얘기 듣기로는 종로가 많은 돈을 갖고 가서 2,000억원을 종로에 쏟아부었다 보니까 2,000억이라는 돈이 종로에 빠져나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막대한 돈이 종로 주거환경개선 지구에 투입이 되었을 것 같으면 그 지역이 말 그대로 주거환경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5개 지구 어느 지구를 가봐도 그 지역은 전부 주택심화 되고 주거개선이 아닌 아주 악법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되는지 답을 좀 주십시오.

○住宅課長 李宗哲 주택과장이 李炯述 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매우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말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변에서는 오히려 환경개악이 아닌가 일면에서는 집행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으로서 그러한 면이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에 담당자하고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글자 그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일부 불량한 주택을 건축면적이라든가 용적률을 높게 해줘 가지고 최소한의 필요한 도로 4m다 지금 저희 환경개선지구에는 2m도로까지 있습니다. 최고 6m, 8m도로를 확보하고 거기에

따라서 집을 지어라 하는 취지가 지금 현재 임시 조치법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일부 건축특례 사항으로 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집을. 그래서 이 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용적률이 저희들이 5층까지 사업승인을 내줍니다마는 내주다 보면 좁은 필지에 4, 5층까지 올라가고 실질적으로 보면 옥탑까지. 시설을 대다 보니까 그리고 개념이 좀 건축법에 있는 사항을 완화를 하다 보니까 동당 집과 집 사이에 확보하는 이 자체가 서로 완화를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50cm, 50cm 떨어져서 한 1m 사이에 서로 창문을 열고 손을 내밀면 맞닿는 그런 지역이 종로구청뿐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20여 개 구청의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특별시에서도 아마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완화조건을 조금, 용적률을 높여주는 걸 조금 조정해서 %를 낮춰야겠다 이런 것으로 해서 조례를 금년도에 심의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의회에서 개정하는 걸로 저희들이

○李炯述委員 課長님! 좋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2,000억이라는 큰돈을 종로에 들여 가지고 서울시가 빚을 졌다고 하는데 이 돈을 가급적이면 서울시와 미리 얘기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도로를 먼저 개설하고 그리고 난 뒤에 건축허가를 내줬더라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차량이 주택가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길을 뚫지도 않고 그대로 주거환경개선지구 거기에다 건축허가를 내주니까 산꼭대기에도 집을 짓고 밑바닥에도 짓고, 중간에도 짓다 보니까 나중에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땅 밑으로 들어갑니다. 도로 밑으로. 한 1m 밑으로 주차장이 들어갑니다. 차가 날아서 가기 전에는 안 됩니다. 차고에 차가 못 들어가요. 주거환경개선이란 뜻이 좀 어떻게 달동네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개선시킨다는 뜻인데 우리 서울 시민들이 누가 물어봐도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개약지구라고 그러는데 지금 종로 관내 11개 지구에 만약에 진행도를 본 위원이 전체 다 가보지를 못 했습니다.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도로부터 개설하고 난 뒤에 허가

를 내줄 수 있는 지역이 지금 있습니까?

○住宅課長 李宗哲 지금 현재 저희들은 도로개설 공사와 병행해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연차적으로 도로기반시설을 확보하다 보니까 일부 다른 도로공사를 안 하는 지역에 건축허가가 들어와도 그 지역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우리 계획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李炯述委員 좋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싶은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한 지역을 깨끗하게, 우리 종로밖에 나가면 아름다운 종로 가꾸기란 얘기가 간판에 많이 붙어있습니다. 아름다운 종로를 가꾼다고 그러는데 집을 지어놓으면 아주 형편없는 지역으로 만들고 있거든.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거환경개선법 자체가 한시법으로 금년 연말에 일단 매듭을 짓고 5년 연장시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10년 전에 이 법을 만들 때는 달동네나 저소득층, 작은 필지의 집들을 지어 가지고 살아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었겠지만 10년 동안 흘러가는 과정에 아주 급속도로 경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달동네의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금 상태로 짓는 거는 누구도 저거는 안 되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조금 전 課長께서도 5층에 올라가서 손을 내밀면 양쪽 집에서 손을 맞대 가지고 악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집이 사선제한도 없고 주차장시설도 일반 저거하고는 다 틀리게 해가지고 집만 밀집되게 지어 가지고 완전히 다 짓고 나면 그 동네는 다시 헐어 가지고 재개발해야 될 그런 아주 살기가 불편한 지역인데 이걸 보고 그대로 악법도 법이라고 그대로 지키겠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악법을 꼭 지켜야겠습니까?

○住宅課長 李宗哲 정곡을 찌르시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동감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을 하고 있는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현 법규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항이 문제가 돼서 지금 서울시에서 이 자체를 용역을 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금년 말까지 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건교부에서도 이 사항을

아마 다시 법을 개정해야 될 것 아니냐

○李炯述委員 잠깐만요. 말씀을 끊어서 미안합니다. 본 위원이 종로 전체의 주거환경지역 5개 지역을 다 가봤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이 끝나는 지구에 가봤더니 차가 못 들어갑니다. 차가 드나 들지를 못 합니다. 지금 집집마다 차 1대씩은 다 있잖아요? 차는 갖고 있는데 이 차를 어디에다 세울 겁니까? 차 없는 사람이 차고증명서 받아 오지 못 하면 아주 차를 못 사게 하든지. 차는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집 한 채를 헐고 5층을 지으니까 5세대가 들어갑니다. 심지어 10세대도 들어갑니다. 그 과반수가 차를 가지면 한 집 헐어 가지고 차가 5대가 들어갑니다. 도로를 뚫는데 폭이 1m50에 한 8~9m되는 자투리땅 그것이 한 26㎡ 이것은 도저히 사람이 팔을 뻗고 들어서지도 못하는 이런 필지를 법에 20㎡, 주거환경개선법에 땅 20㎡, 땅 6평 남짓한 여기에다 집을 짓고 살아가 하는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거는 굳이 그대로 악법도 지키겠다고 그래서 밀고 나가고 있죠? 며칠 전에 서울시 주택과장이 종로구청에 내려보낸 공문에 보면 그거를 만약에 그대로 이행하지 않고 다른 조치를 할 것 같으면 공무원을 엄중 문책한다는 공문을 봤습니다. 그 공문이 아무리 서울시에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종로구청에서 그 공문을 보고 수용을 할 겁니까?

○住宅課長 李宗哲 委員님들께 참고사항으로 도시저소득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임시조치법 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는 '89~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인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조금 건의를 하고 해서 5~10년 연장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건의를 했는데 지금 12월 1일 공고된 사항에 의하면 기한을 삭제 개정하는 걸로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기한이 삭제됨으로 해서 이 건 언제라도 주거환경사업지구로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李炯述委員 그러면 한시법이 아닌 앞으로 계속해서 이 법을 지켜 나가겠다 그 얘기죠?

○住宅課長 李宗哲 네.

○李炯述委員 그러면 20㎡ 이건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의 땅 6평정도 되는 이 대지 위에다가 거기도 4~5층으로 들어올려 집을 지어서 과연 사람이 살 수 있다고 보십니까?

○住宅課長 李宗哲 6평에 집을 지어서, 뭐 지으려면 지을 수 있겠죠.

○李炯述委員 뭐요? 대지가 6평입니다. 올라가는 게 6평이 아니고.

○住宅課長 李宗哲 건축적으로 공학적으로 지으려면 지을 수 있지만 과연 거기에 집을 지어서 지금 현재 경제수준에 맞게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하지만 저도 안 되리라고 봅니다. 아까 지적해주셨습니까만 지금 확대보상은 20㎡미만 그리고 대지 폭이 4m이하하고 형태가 삼각형이라든가 모양이 이상해서 건축을 배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확대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도저히 형편으로 봐서 집을 지을 수 없을 경우에 한해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이상이 넘는 거는 저희들이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확대 보상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거는 탄력적으로

○李炯述委員 잠깐, 잠깐만요. 말씀 끊겠습니다. 내년도도 역시 주거환경개선지구 11개 지구에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돈이 전부 서울시에서 내려오니까 주는 대로 쪼개 가지고 11개 지역을 쪼개주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도 역시 고통스럽고 동네가 아주 힘들다. 생활도 힘들고. 매년 조금씩 헐었다 뜯고 헐었다 뜯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 문제도 생기고 좋은 지역을 만들 수도 없고. 돈을 한몫 받아올 것 같으면 도로개설을 하고 그 뒤에 건축허가를 내주면 좋은데 쪼개 가지고 계속 나오니까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산꼭대기에도 허가를 내줍니다. 허가 들어오는 대로 내주죠?

○住宅課長 李宗哲 네.

○李炯述委員 그리고 도로도 안 뚫어놓고 저 밑에 가 가지고 중간쯤에 가 가지고 또 허가를 내주죠? 이 부분을 도로 편차도 생각 안 하고 계속 주민들이 민원이 와 가지고 시비를 하니까 결국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그 지역은 완전히 주거환경지구가 완료되고 나면 분명히 도로는 있는데 차도

못 들어가는 도로, 아주 엉망진창이 되는 주거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住宅課長께서는 서울시장하고 답판을 짓더라도 이 600년 된 종로는 어느모로 보든 이 종로는 잘 가꿔야 되는데 이 지역에 11개 동 저거를 정부차원에서라도 돈을 한몫으로 해서 받아 가지고 좋은 지역을 만들 수 있는 복안은 없습니까?

○住宅課長 李宗哲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특히 종로는 역사와 문화가 있는 지역이니까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원서지구라든가 쉽게 말하면 대상이 북촌마을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도 가회지구인데 가회지구는 李炯述委員님께서 노력해서 가지고 개발방식을 공동주택 개발방식으로 해서 3~4,000 정도로 해서 북촌마을에 맞는 건축양식으로 최대한 해서 합동개발이 좋은지 어떤지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환지방식 개념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에 대해서도 금년도 5억 3,000만원을 가지고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주는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가회지구나 원서지구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까만 아까 지적해주신 대로 어차피 서울시의 예산으로 사업을 구간구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참고로 해서 건축허가 낼 때 높이를 이렇게 지어 주십시오 하고 지도를 합니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지적불보합이라든가 옆집에 대해서 남의 땅을 점령하고 있는, 본인도 모르게 점령하는 이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미처 도로확보가 못 되는 사항이 건축을 하다보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도 한꺼번에 예산을 배정받아 가지고 한꺼번에 공사해서 빨리 시일 내에 기반시설이 확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炯述委員 마지막으로 종로 관내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시작 된지 한 8~9년이 되도록 진행도가 10~20%밖에 안 되는 지역도 있는 걸로 압니다. 물론 지역 주민들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문제는 집행부인 공무원의 문제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모든 분야에 전문성을 띠면 일 진행이

빠릅니다. 한 1년 배워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이란 법 자체를 읽고 배우는 사이에 그 다음 해 되면 그 직원을 다른 데 보냅니다. 다시 다른 직원이 오면 그 직원이 또 1년 배우다 보면 또 바뀝니다. 일 자체도 진행이 안 되고 그 지역은 망가지고 주거환경개선을 시킨다는 게 결국은 계속 여러 가지로 법을 다루는 담당 공무원이 전문성을 띠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진행도 나아질 테고 나아가서 주거환경개선도 어떻든 현재보다는 한결 낫지 않겠나! 전문성있는 직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건의해서 한 공무원이 오래 있으면 부패된다 하는 거는 민원이 많이 있는 그런 데는 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곳에 오랫동안 정성을 쏟는 그런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전문직에 속하는 공무원이 오랫동안 근무해서 한 지역을 잘 가꿀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弼根 李炯述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네. 崔康洵委員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崔康洵委員 崔康洵委員입니다.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5쪽 본 위원이 작년 '98년도에도 동감사를 나가서 많이 느낀 일이고 또 이번 동감사에서 많이 느꼈는데 금방 우리 李炯述委員님께서도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담당공무원이 자꾸 바뀌니까 책임을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하다보니 마지막에 있는 담당이 징계를 먹는 것을 이번에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허가건물 발생을 보면 백 없는 사람들이 2~4평짜리 슬쩍 지어 가지고 창고로 쓰려다 그것이 항측에 나와 가지고 적발돼서 벌금을 다 물어요. 다 물고 99㎡, 69㎡ 뭐 이런 것은 10평, 20평 막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백 없이는 그렇게 함부로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택과에서는 동사무소에서 구청에다 적발보고만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조그만하게 4~5평 짓는 것은 3~4번씩 다 때려부수면서 이렇

게 10~30평씩 되는 무허가건물은 구청에다 보고를 해가지고 지금 버젓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 위원이 거기를 나가보면 주민들이 우리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이죠 현지에 가보려고 해도 진짜 이것은 말썹이 생길까봐서 가보지도 못하고 住宅課長님한테 여기에서 답변을 주십시오.

○住宅課長 李宗哲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그것은 구청에서 적발을 하든 저희들이 순찰해서 자체 적발을 하든, 안 그러면 서울시 향측에 의해서 적발해서 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에 향측에 의해서 적발되어 오는 보고사항이 제일 많고 다음은 동에서 자체적발을 해서 올라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뻘을 말씀하셨는데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뻘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봐주지를 못 합니다. 주민들이 많이 구청장실에 항상 옵니다. 와 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거절을 합니다. 이런 건 법대로 처리해야지 안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다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종로에 와서 제가 주택과장을 맡아 처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가서 강제로 철거를 합니다. 동에서 보고가 올라오면, 철거를 하면 집행을 또 합니다. 저희들 노는 날.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심지어 7회까지 철거한 적이 있습니다. 여덟번째 보면 어제 해냈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거는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고발을 하면 그때는 돈으로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합니다. 철거반이 철거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7명이 있는데 지금 장비래봐야 망치, 함마, 커터기 이런 정도입니다. 다른 장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지금 무허가건물이 종로1~2가쪽을 보면 철골조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거는 저희들 인력으로 되지 않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반영해서 용역을 줘서 철거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의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다시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건이 생기면 저희들이 그 100건 전부를

철거하지는 못 합니다. 소소한 거는, 한두 평 늘리는 이런 거 보면 이웃집과 민원에 의해서 오는 건수가 많습니다. 이런 거는 조치를 안 할 수가 없고 그건 저희들이 다 조치를 합니다만 100건이 생겼다고 해서 그 100건 다 처리는 못 하고 일부는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먹이고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에도 큰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장비로 안 되는 것은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崔康洵委員 이런 이행강제금은 내고도 하겠다고 전부 그러는데 지금 이행강제금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문제는 그 분들은 과태료를 내고라도 주위의 피해만 없다면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과태료를 내고 한다는 것은 구수입도 되고. 그리고 6호선 지하철도 보면 환풍기 넣어놓는 거 그걸 동사무소에서 와서 자르라고 그래 가지고 콘테이너 같은 쇠덩어리로 자르는데 그걸 자를 때 우리 동에서 잘 하는구나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요 근래 보면 버젓이 또 해놓고 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의원들이 허수아비구나. 동직원 보다도 못 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을 때 굉장히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어떤 사람은 슬그머니 구멍이 담 넘어가듯이 봐주고 어떤 사람은 1평 위법된 것도 그걸 자르라고 그래 가지고 2층에서 1층까지 내려 자르고 이런 것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이럴 때 구의원들이 상당히 얼굴 들고 동네를 못 다녀요. 한뼘 되는 거 그런 거는 봐줄 수도 있는데 그걸 가서 우리가 얘기했다고 자르라고 그런다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슬그머니 봐주고 하는 이런 게 있고 불법건축물은 오래 전부터 법이 있는데도 계속 증가만 하는데 사전에 구민들 재산이 보호되는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를 하든지 상위법에 불합리한 점을 현실에 맞도록 상부에 의견을 제시하는 대안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住宅課長 李宗哲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는 건축법상 '92년도 1월 이전에 건축된 무

허가건물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건 단 1회 부과로써 끝이 납니다. 그 이후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은 행정 질서벌이라고 행정용어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연 2회에 걸쳐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라고 건축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매년 2회에 걸쳐서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1년에 1회, 한번에 한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서 모든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처리하게 되며 또 이의신청제도가 있습니다.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법원으로 또 이송을 합니다. 그러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납부되는데 이건 국고로 환수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일부는 국고로 환수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제로 좀 넘겨줘야 될 것 아니냐 하고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저거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고 그래도 안 낸다 할 때 저희가 재산 압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압류를 해보니까 금년에만 2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되면 재산압류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철거하는 건물도 다 주민의 재산입니다. 사실 저희도 나가서 민원이 있어 가지고 현장에 나가면 철거할 때는 저희도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아주 못쓰게 철거를 하지 않고 가령 슬라브로 했다고 하면 슬라브로 해서 그 공간에서 거주를 못 하도록 구멍을 낸다던가 벽면 일부를 철거하던가 이렇게 하고 돌아옵니다. 일부 건축자재는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무지막지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행강제금 같은 제도도 있고 하니까 구수입도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면에서는 崔康洵委員님 의견대로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탄력적으로 무허가건물을 주민 재산이니까 탄력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도 신문에 났습니다. 더이상 서울시나 그런 데 언급은 없습니

다마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접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98년 이전 부과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崔康洵委員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종로 1,2,3,4가에는 30건이고 창신1동에는 16건인데 금액을 보면 우리 창신1동에는 4,000만원이 넘는 금액이고 종로 1,2,3,4가는 30건인데 2,800만원인데 우리 창신동에는 10평, 20평, 30평씩 무허가건물이 늘어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아까 뻑 소리가 나온 겁니다. 우리 동네는 불법건물이 적은데 금액은 높고 종로 1.2.3.4가는 건수가 많은데 금액이 적다 내가 이래서 아까 질의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弼根 주택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들께서 질의할 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답변이 너무나 길어요. 좀 짧고 함축있게 해주십시오.

○住宅課長 李宗哲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말이죠, 산술공식이 있습니다. 공식대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崔康洵委員 그러면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그 래야 본 위원도 동네에 가서 할 말이 있지 이것 그래도 우리 사무감사를 동네 유지분들이 보고 지적을 한 것인데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住宅課長 李宗哲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崔康洵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弼根 崔康洵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委員 있음)

예, 李炯述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炯述委員 崔康洵委員님의 질의에 덧붙이겠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답을 주십시오. 240쪽에 보면 '96년도에 부과금액하고

징수금액을 보면 한 60~70% 정도가 체납이 되었죠? '99년도는 부과금액하고 징수금액은 근 90%가 체납액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崔康洵委員의 말씀에 동감입니다. 종로4가 세운상가에 무허가를 짓는 것을 얘기를 들어봤는데 거기는 한 10평을 지어놓으면 한달에세가 엄청 나온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되도록 유도하는 거고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것이 전혀 걱정없는 사람들도 여기의 장기 미준공 건물은 건축을 할 때에 보통 조그만 건물은 본인이 짓습니다. 조금 잘못되었다고 그래서 준공되지 않아서 이행강제금을 물리면 이 사람들이 물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종로 판내도 수 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부과를 아무리 해봐도 돈은 내는 사람만 손해입니다. 그렇죠? 준공이 안되니 등기도 안되는 거죠? 재산상의 전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죠? 미준공 되면.

○建築課長 李漢求 미준공 되면 등기는 안되죠. 그것은 무허가건물은 등기는 됩니다. 되는데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등기는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정식 등기

○李炯述委員 장기 미준공 건물들에 대해 이행강제금 내보는데 상황별로 봐서 건축과에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불법건축물을 애초부터 해가지고 공익에 저해가 되고 도시 미관에 저해가 되고 이러한 부분하고 골목 아주 깊숙한 데 들어가서 전혀 이웃의 민원도 없고 공익도 전혀 해치지 않고 이웃 진정도 없고 이러한 건들은 선별해서 다소 조그만 불법이 되었다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관계부서에서 좀 치유를 해가지고 준공을 유도해줄 수 없는지 답을 해주시죠.

○建築課長 李漢求 그것은 지금 현행법으로 완화된 법에 의해서 최대한으로 저희가 양성화 할 수 있는 것은 양성화를 유도하고 있고 지금 아까 주택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특별조치법 양성화 지금 85㎡로 신문에 났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에서 구청장협의회에 발의를 했습니다. 옛날 장기 미준공을 다루다 보니까 장기 미준공은 양성화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 전에 '82년도 이전

건물은 양성화해줬는데 그 이후 위법한 건물은 지금 행위가 안되니까 재산상도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구청장님이 구청장협의회에 발의를 해주셔서 전체 25개 구청장 사인을 받아 가지고 국회나 그렇지 않으면 건교부 이런 데로 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 신문에 난 것은 85㎡로 났는데 그것은 사항을 다시 한 번 알아봐야 되겠고 저희 처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여태까지 위법한 것은 한번 양성화해줘 가지고 그 전에 양성화할 적에도 일부 돈을 받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양성화해주시시오 해가지고 구청장협의회에서 발의를 해가지고

○李炯述委員 건축과장! 지금 '99년도에 부과금액이 1억 2,000만원인데 징수금액이 1,500만원입니다. 10%입니다. 징수한 것이. 지금 또 갖다 매겨놔두면 주민들 고통만 주는 거지

○建築課長 李漢求 저희도 연2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연1회만 하고 있습니다.

○李炯述委員 받지도 못할 것을 자꾸 부과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답을 한번 해주십시오. 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데.

○建築課長 李漢求 처리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저희가 부과를 안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징계가 따르기 때문에 신분상 안할 수 없고 해놓고 여기에

○李炯述委員 잠깐만요, '99년도에 1억 2,700만원을 부과를 해가지고 지금 1,500만원이 징수되었는데 90% 못받은 사유가 뭐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못받은 것은 그 분들이 내셔야 되는데 안내시면 저희는 압류를 시켜놓습니다. 압류를 시켜놔도 지금은 그분들이 당장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징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李炯述委員 신문에 보시면 바로 종로구청 판내에 구청을 상대로 해가지고 '95년 1월 5일자로 장기 미준공 건물이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공익에 침해되지 않고 이웃집에 피해를 주지 않고 이러한 일반주택 한쪽에 외진 데 이런 데 있는 것은 당연히 준공처리를 해줘야 된다고 해서 서울

고법에서 주민들의 저것을 해줬습니다. 구청장협의회에서 올렸다고 하지만 이것을 건축과에서 다시 한 번 해서 이 부분에 계속 지속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 이행강제금 부과만 시키는 것보다는 행정적인 좋은 면을 적용해서 여기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 준공을 해주면 재산세도 정상으로 받고 세금도 제대로 징수를 하고 주민 고통도 덜어주고 그 주민이 자기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도록 선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弼根 李炯述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委員長!」 하는委員 있음)

예, 金福同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福同委員 오늘 답변을 국장님으로부터 들어야 될 사안이 있었는데 그 양반이 공석이라서 답변을 못하시고 담당과장님들께서 답변을 성실하게 좀 해주십시오.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에 작년엔 건축법이 몇번 바뀌었습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종로구에서 건축법이 바뀐 것은 없고

○金福同委員 고도제한을 풀었다가, 늘었다 줄어든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종로구에 작년 이맘 때도 제가 金福同委員이 종로구의 건축물 높이제한을 과감하게 풀어라, 해제해라 하는 얘기를 해서 질의도 했고 이 좌석에서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건축법 높이제한을 보면 종로구 4대문 안에 20층 이상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규정에 20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都市計劃課長 張東祐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그 사항은 서울시 도심부성장관리계획에 의해서 4대문 안은 20층 내외로 규정되어 있고 그 외에는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25층 약 30층 정도로 지금 제한을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金福同委員 과장님! 제가 한가지 건의하겠습니다. 중구를 보면 중구의회에서 건축조례를 했습니다. 조례를 세웠어요. 우리 과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고명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종로구에도 건축조례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建築課長 李漢求 지금 건축조례는요 시조례만 있고 구 조례는 다 폐지되었습니다.

○金福同委員 중구청에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중구에는 건축조례가 조례상 다 되어 있던데

○建築課長 李漢求 건축조례는 서울시 같으면 시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구 조례가 아니고.

○金福同委員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평창동에 민원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까? 고도제한을 하지 말라는 이런 민원인데 거기에 보면 우리 구청에서 평창동 72번지 1필지 그 외에 쪽을 보면 162쪽입니다. 북악맨션 건축사업조합 현황 해가지고 평창동 72 외 1필지 그 다음에 사업주체 북악맨션건축조합 조합장 이순중, 롯데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임승남 여기에 몇층으로 나갔습니까?

○住宅課長 李宗哲 그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과 소관이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현재 13층, 14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층이 2개 동이고 12층에서 13층 해서 1개 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에게 민원을 제출하신 분이 금강하이츠빌라 252세대 주민대표로서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고도제한을 해달라 이런 뜻인가요? 너무 높이 지으니까 낮게 지으라는 얘기죠?

○住宅課長 李宗哲 예.

○金福同委員 빌라 앞에 현재 도로공사로 인해서 많이 침하되고 붕괴되기 직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구청측에서는 한번 다녀보신 일이 있는지?

○住宅課長 李宗哲 그것은 자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두번에 걸쳐서 주민 좌담회를 하고 부구청장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습시다마는 북악맨션은 저희들이 평창동 간선도로변의 18m 5층 이하로 고도제한하기 전에 7월 31일자 고시되어 가지고 고도제한이 되었는데 이것은 2월 9일자 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 6월달부터 사업이 착공되어 가지고 현

재 터파기 하고 있습니다. 암반 굴착 지하주차장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민원이 아마 분진이라든가 소음, 진동에 의해서 균열이 간다든가 이러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금강하이츠 주민들이 아마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시는 중에 고도제한 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다발적인 민원이 오기 전에 구청측에서는 지역주민 편에 서서 주민들을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住宅課長 李宗哲** 예.

○**金福同委員** 그것은 덮어두기로 하고 현재 상위법에서는 이번에 동료 위원인 崔康洵委員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무허가로 미등기시 건축 족보가 없는 거죠? 족보가 없는 집들이 종로구에 대략 몇 세대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住宅課長 李宗哲** 제가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金福同委員** 종로구 전체 백 몇 세대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 지역에 나가서 충신동 고지대 살고 있는 분들, 이화동 인접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 창신동 고지대에 살고 있는 분들 이 분들을 위해서 상위법에서 잘 통과가 돼서 좋게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住宅課長 李宗哲** 예.

○**金福同委員** 그것은 바로 본 위원이 지난해 鄭興鎭 區廳長께 엄청난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기억 나십니까?

○**住宅課長 李宗哲** 예.

○**金福同委員** 구청장협의회에 가서도 구청장께서 25개 구청장 사인을 받아 가지고 상위법에 올리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이렇게 사전에 만들기 전에 과감하게 구청장을 도와주고 구청을 위해서 종로구민을 위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또 아까 매년 1회에 걸쳐 부과를 시킨다고 했는데 부과도 그렇습니다. 무작정 앉아서 과장님 책상 어디에 앉아서만 직원들 올라오는 대로만 결재를 부과시킬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현지에 나가서 과연 이 사람이 부과를

해도 타당성이 있는가를 잘 검토한 후 부과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住宅課長 李宗哲** 예.

○**金福同委員**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분야에 대해서 녹지과장님께 간략하게 몇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종로공원은 세계에서 유명한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죠? 유네스코에도 올라있고 그렇죠?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예.

○**金福同委員** 그곳에서 관리하시는 분들 몇분이나 계십니까? 관리감독하시는 분이.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현재 정규가 4명 나가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그 넓은 공원 내에 공익요원이 근무하고 있죠?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예, 하고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공익요원 관리하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공익은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金福同委員** 매일매일 점검을 합니까?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고정배치를 하지 않고 형편에 따라서 합니다.

○**金福同委員** 고정배치를 하셔야죠. 고정배치 하지 않고 형편에 따라서 하면 말이 안되죠. 여름에 더웠을 때 그 공원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가봤습니다.

○**金福同委員** 어떻던가요?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이용자가 많습니다.

○**金福同委員**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눈뜨고 볼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알고 계십니까?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예, 알고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심고 공원조성을 해놓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 공원 만들기 위해서 외부로 다 보내놓고 공원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원이 되었으면 그래도 종로

구청에서 과감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변 아니면 대변 그곳에서 노숙을 하는 것이 아니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종로구민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이것을 과감하게 공익요원을 배치한다 할지라도 매일 매일 점검을 해서 깨끗한 종묘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외에 과장님께서 녹지과에서 1년에 예산을 얼마 쓰고 계십니까?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총 예산이 약 11억 쓰고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좋습니다. 11억은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많다고 생각합니다.

○金福同委員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나무같은 것을 식수를 해서 어느 곳에 나무를 몇주를 했다 소나무를 몇주를 했다 한주에 얼마다 이러한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이러한 계산이 없습니다. 다 묶어서 몇몇 나무 해서 얼마 이렇게 계산을 했지 소나무 몇년생 한그루에 얼마 이렇게 정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습니다.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시공설계는 다 되어 있는데 그렇게 빠다 보면 상당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金福同委員 과장님! 시공설계에 들어있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감삼니다. 오늘은 감사 예요. 큰 나무는 몇년생 한그루에 얼마, 작은 나무는 얼마에 사다 심었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표시가 없고 그 외에 한가지를 강력히 지적하고자 하는데 지난 6월달에 본 위원이 질의도 했습니다. 대학로를 보시게 되면 대학로 가로수 인도블록입니다. 인도블록 사이에 조그만 예쁜 나무를 싹 심어놨죠? 그 예산이 6천 몇백만원 들어갔죠?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예.

○金福同委員 6천 몇백만원 들어갔으면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관리를 앓고 지금 가보십시오. 밟아서 말라죽은 상태입니다. 과장님! 그때 답변이 말라죽으면 심었던 사람들이 다시 세워주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죠?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금년에 하자 몇번 했습니다.

○金福同委員 하자를 했는데 계속 죽습니까?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계속 밟으니까 피해가 있는데요.

○金福同委員 그 사람들 죽은 나무를 계속 심어놨나 보네요.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관리소홀도 있겠지만 인위적 피해가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최대한 구청에서 관리를 한다면 본 위원이 과했습니다. 보도블록 위에 시멘트에다 흙만 조금 갖다와 가지고 나무가 살 이유가 없습니다. 제대로 공원을 하면 완전히 잘라서 흙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심어야지 시멘트로 된 데다 나무를 심어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종로구민의 혈세, 서울시민의 혈세, 대한민국의 혈세를 가지고 나무 한그루라도 심사숙고해서 꼭 살 수 있도록 살릴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弼根 金福同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委員 있음)

예, 吳錦南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錦南委員 吳錦南委員입니다. 아까 주택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자료 1페이지에 보면 기타란에 보면 총 45명을 기용을 하고 계시는데 주택과 9분, 도시계획과 5분, 건축과에는 한분도 안계시고 녹지과 31명 이 인원은 공익근로요원입니까?

○住宅課長 李宗哲 기타 인원에 45명은 각과의 기능직입니다.

○吳錦南委員 그러면 방법요원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住宅課長 李宗哲 그런 분들이 포함됩니다.

○吳錦南委員 공익요원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 주택과나 도시계획과, 공원 녹지과에서 이 공익요원이 또 투입이 되어 있죠?

○住宅課長 李宗哲 공원녹지과는 공익요원이 있고 도시계획과는 없습니다.

○吳錦南委員 앞으로는 이 자료도 좀 넣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총인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로 봐서는 종로구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인원이 안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자료를 넣어주셔야 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시기 좋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건축과에서도 그런 인원이 지금 필요치 않습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저희 과에서는 지금 필요한 인원이 기타 인원보다는 앞으로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신고업무가 저희한테 올라왔을 적에 건축직 직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컴퓨터 타이피스트가 없는 실정인데 그러한 부분은 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吳錦南委員 업무에 필요한 인원은 과감하게 상부에 얘기하셔서 지원을 받아야죠. 거기에 맞는 인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6급, 7급, 8급, 9급 이렇게 쪽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은 다 기술직입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住宅課長 李宗哲 주택과에는 1계장이 건축이고 지금 현재 5급과장은 제가 토목직입니다. 건축과에는 5급이 과장이고 모두 계장이 건축직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 5급과장이 토목직이고 계장 1명이 도시계획계장이 토목직이고 8급 행정직이 2명, 건축직이 1명입니다.

○吳錦南委員 주택과나 건축과에는 행정직이 있습니까? 8급, 9급.

○住宅課長 李宗哲 예, 있습니다.

○建築課長 李漢求 행정직 1명이 있습니다.

○住宅課長 李宗哲 서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는 일반행정 공동주택관리가 있습니다. 무허가단속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행정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토목공사는 토목직이고 건축허가에 해당되는 사항 그리고 재건축 민영주택 승인에 따른 건축직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 나가 계시는 직원들 중에 건축을 담당하는 분이 어느 정도나 계십니까? 몇분이나 계십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건축직이 담당하는 곳이 평창동밖에 없습니다.

○吳錦南委員 그 나머지는 행정직이죠?

○建築課長 李漢求 행정직이나 전부 토목

○吳錦南委員 그 분들이 현장에 가서 뛰는데 많은 문제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建築課長 李漢求 그래서 저희가동에 있는 신고업무를 가져오려고 지금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가지고 올라와서 저희 과에서 처리할 겁니다.

○吳錦南委員 그리고 李炯述委員님이나 또 선배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신 중에 제가 보충질을 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이 과장님께서 한시법은 '89년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5년 연장이라는 말씀이 있다고도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금년말로써 한시적으로 법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할 수 있다 환경개선지구처럼 할 수 있다 이러한 뜻인지 이것이 명확한 답이 아닌 것 같아서

○住宅課長 李宗哲 제가 답변한 것인데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명료하게 말씀을 못드린 것 같습니다. 한시법이 금년말로 되어 있는데 기한조항을 삭제하겠다는 얘깁니다. 그 법에서 기한만 '99년 12월 31일까지인데 개정입법을 해서 그 조항을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2000년 이후에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건의하기를 한 5년, 10년 연장해주십시오 구청장협의회에서 건의했는데 입법취지 개정취지를 보면 그 조항을 삭제해버리겠다는 얘깁니다.

○吳錦南委員 주거환경개선지구 그 법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법조문에 기한만 없애겠다

○住宅課長 李宗哲 그러면 아무 때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시법이 아니죠.

○吳錦南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李炯述委員님이나 다른 선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법이 악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존속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법 같습니다. 국회

의원님들이 각 동네를 안 돌아다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7·8페이지 업무보고를 보시면 환경개선지구 내에 제1차로 창신동 1,645세대, 2차로 연건동 319세대 이렇게 쪽 보면 어느 지역은 유아원이 2개 있고 어린이 놀이터가 2개 있고 공동이용시설인 마을회관, 노인정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은 환경개선지구 내에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그럼 이 설계 자체를 어디서 합니까?

○住宅課長 李宗哲 이거는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이 되고 나서 개선 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줘서 그 때 용역 계획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개선계획으로 그것을 입안을 했습니다. 주로 보시면 창신동 같은 데는 달동네입니다. 그래도 연건동이나 동승동 지역은 그래도 주거 여건이 나은 지역은 그런 시설이 조금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런데 달동네든 아니든 그걸 떠나서 어느 지역이나 사람이 사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유아원도 있어야 하고 놀이터도 있어야 하고 마을회관도 있어야 하는데 어느 지역은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환경개선지구 내에 하나도 없다는 것은 설계용역을 줬다 하더라도 담당 부서에서 조정하는 게 있어야지 그 지역 내에 사는 분들은 이러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서 어린이 놀이터에 나가서 놀 수 있으며 마을회관이나 기타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겠는가? 용역보다도 그 용역이 들어왔을 때 담당과장님이나 부서장님은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이 다시 재수립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또한 도로도 4m도로를 내다보면 확대보상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확대해서라도 그러한 게 안 되어 있는 지역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할까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는 지역을 보니까 물론 저희 사직동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신교동, 가회동도 그렇고 또 누상동, 옥인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입니다. 이런 데는 과감하게 확대보상을 하셔서 시에 예산을 더 추구하고 하셔서 그런 시설이 갖춰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住宅課長 李宗哲 당연하신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이건 용역을 할 때 인접지역에 이러한 시설이 있다던가 하는 것을 다 참고해서 용역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역의 여건은 저희보다 委員님들이 더 소상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 사업 개선계획은 변경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변경하는데 서울에서 승인을 말아야 되는데 이게 서울시가 투자가 되다 보니까 잘 안 해주려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리해서 하는 지역은 확대보상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吳錦南委員 다음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주유소에 보면 가건물 비슷하게 해서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용변이나 소변을 볼 수 있게 가건물을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신고사항으로 되어 가지고 철거를 해야 된다.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파에서 권장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신고해 가지고 철거장이 내려오고 또 그런 민원이 저한테 접수돼서 그걸 해결한 바도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도 그런 게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현장에 나가있는, 각동에 나가있는 건축담당이나 동장들이 전혀 그걸 모르고 그대로 수용해서 구청에 올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것도 각동에 나가있는 건축담당들을 한번씩 구청으로 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 지식적인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항측이 내년부터 없다고 그랬는데 그 사실을 통보받은 적 있습니까?

○住宅課長 李宗哲 없습니다.

○吳錦南委員 우리 종로지역은 삼청동하고 청운동, 효자동은 항측에 안 나오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住宅課長 李宗哲 네

○吳錦南委員 저는 바로 이웃동네에 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지역에 대해서 업자나 집을 수리하

는 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16개 동은 조금만 항측에 나와도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전 주택과장, 누구라고 이름은 안 대겠습니다만 그 분을 서울시 주택과장하고 직접 가서 대답하면서 고성이가 오고 갈 정도로 종로구의 무허가를 보호해주는 그런 정도의 업무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내가 그 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만 10㎡ 정도의 소규모, 서민이 사는 무허가에 대해서 시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해야 되겠느냐? 여긴 서민들이 살기 때문에 좀 봐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더니 당신 그쪽 구민 한 사람이나고 묻더래요. 우리 주택과에서도 우리 지역의 서민이 사는 데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강제이행금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능하면 민원을 해결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항측에 안 나오는 지역이라고 해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 항측에 안 나오는 지역의 무허가건물이 더 적어요. 금년에는 청운동하고 2개 동은 아예 무허가 신발생 건수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쪽 지역 주민들도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가건물을 짓고 있겠지만 서류 상에 없으니까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만 항측에 나오든 안 나오든 과장님께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李宗哲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吳弼根 吳錦南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福同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福同委員 金福同委員입니다. 우리 충신동 어린이집은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이 어린이집은 구립이기 때문에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 건축은 '94년 9월 24일에 했고 '94년 12월 30일 날 준공을 했습니다. 저는 비가 올 때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원장님이 오셔서 비가 샌다고 해요. 위에서는 적은 비가 오는데 안에서는 큰비가 내리고 있어요. 놀이방이고 뭐고 공사가 날림으로 돼 가지고 비가 새고 습기가 차서 견디지 못할 정도인데 이 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金福同委員 고쳐줄 의향은 없습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지금 현황을 모르기 때문에

○金福同委員 저하고 약속할 수 있습니까? 조사를 해서 이 공사 자체가 잘못했다면 옛날 시공했던 회사를 찾아서라도 다시 고쳐주던가 아니면 다시 지어 주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 문제로 행정소송을 내겠습니다.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관급공사라고 해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런 공사가 어디 있어요? 과장님을 잘 모르시겠지만 날날이 파헤쳐 가지고 이 업자를 만난다면 확인을 해서 다시 지어 주십시오. 이어서 공원녹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종로5,6가동에 소공원이 있는데 거기 다녀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에 팔각정이 있는데 그걸 어린애들이 밀어도 왔다 갔다 하는 거 아십니까? 거기서 애들이 놀다가 바람이 불어서 밀린다든가 해서 다친다면 절대적으로 공원녹지과장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그 공원부지는 저희가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손을 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사고만 안 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문화재는 우리 구 공원녹지과 소관 아닙니까?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네

○金福同委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3일 전에 길을 내다가 봤는데 그게 완전히 구유지로 되어 있어요. 난간이 한 1m 정도 되는데 차가 위에서 내려오다 보면 안 보입니다. 차가 곧장 들어가 가지고 사람이 하나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난간대를 설치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텐데 난간이 없어서 큰 사고가 났어요. 차량이 남의 집 지붕에 걸쳐 있었어요. 이런 것도 검토하셔서 나는 걱정되는 것이 저도 무식하지만 그분들 몰라서 그래요. 저 같으면 그걸 알아 가지

고. 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다는 걸 알아 가지고 종로구청을 걸어서 변상조치 청구소송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곳이 있으면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하고 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텐데. 이 점에 말씀을 드리고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옥인동 어린이공원 등 2개소, 조합놀이터 1석, 파고라, 평의자, 고무매트, 자연석 쌓기 해서 1억 1,567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했으면 자연석은 몇m 쌓다, 높이, 길이 이런 걸 표시를 해주셔야 하고 또 놀이터 몇 개를 했는데 얼마가 들어갔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셨더라면 더 좋았을텐데 그런 게 없죠?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네. 다음에는 자세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구체적으로 큰 거, 작은 거 구분해서 큰나무는 얼마에 샀고 작은 나무는 얼마에 샀고 10년짜리, 100년짜리는 얼마에 샀다고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보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답변을 내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넣었는가를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옥인아파트 앞 개천가에 있는 조그마한 삼각 땅입니다. 거기에는 밤이 되면 성인과 어린이들이 같이 사용하고 낮에는 아파트에 어린이들이 많아요. 다른 데보다도. 그래서 놀이터가 낡아 가지고 현대식으로 바꿔준 겁니다. 그런데 개천변이기 때문에 개천하고 아파트하고 바로 위에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있는데 축대죠. 그 축대가 떨어지면 위험하니까 그 길이만큼 자연석을 쌓아준 겁니다. 그리고 고무매트는 아이들이 놀다가 떨어지면 다칠까봐 폭신 폭신한 고무매트를 깔아준 거고 파고라는 어린이 놀이터에 사실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용면으로 봐서는 어린이 전용인데 성인들 이용이 많기 때문에 야간, 여름철 같은 때는 그 지역 주민은 실외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에어컨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만든 조그만 놀이터입니다. 이걸 그대로 놓으면 장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책자를 만들다보면 만드는 부서에서도 자

꾸 줄이고 요약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좀 늘려서 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과장님이 신경써서 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여러 군데 공원을 가서 봤는데 어떤 악종 벌레인지는 모르지만 나무가 다 죽어갑니다. 뜯어서 보면 까맣고 조그만 게 붙어서 보니까 그 속에 피처럼 빨간색이 나오는 벌레가 나무를 다 갈아 먹나봐요. 그래서 나무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그런 거 보러 다닙니다. 공원의 감나무나 과일나무를 보면 아주 이상한 벌레들이 붙어 가지고 나무들이 다 죽어요. 명년 봄부터는 시골에 치는 약이라도 쳐서 이런 게 붙지 못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심었던 나무를 끝까지 보호하고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吳弼根 金福同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以煥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以煥委員 金以煥委員입니다. 우리 同僚委員님! 그리고 局課長님들!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때로는 해설까지 해주시고 어떤 면에서는 고맙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만큼 간단하고 명확하고 짧게 답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거환경개선지구가 16건이죠? 이게 지금 진행 중인 상태인가요?

○住宅課長 李宗哲 그렇습니다.

○金以煥委員 우선 먼저 국회에서 이렇게 무한정 연기를 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주거환경개선법으로 보면 되겠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게 성공적이라고 보십니까?

○住宅課長 李宗哲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입장에서만 만족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金以煥委員 본 위원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돌아보면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는 현대의 하꼬방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4, 5년 더 가면 완전히 하꼬방촌이 된다고 항상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한정 연장한 데는 어떤 개선된 주거환경개선법이 좀 개선돼서 이렇게 한 건 아닙

니까?

○**住宅課長 李宗哲**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건축조례를 임시조치법하고 이걸 좀 개정하려고 합니다. 완화시켜줬던 걸 용적률이나 이런 걸 프로테이지를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金以煥委員** 무허가건물개선지구를 가보면 하늘이 안 보여요. 차고도 없어요. 도로도 없어요. 골목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차는 다 갖기를 원할텐데 그럼 차는 어디에 세워둬니까? 아무 데나 세울 수밖에 없지요. 그 부분도 문제지만 특히 그 사람들이, 아까 6평 가지고 집을 짓는다고 했죠? 그러면 그 6평으로 집을 짓는다고 그 사람들이 그럼 하늘만 막 쏘신단 말입니다. 아무리 주거환경개선법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법이라고는 하나 그러한 문제들을 수정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課長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住宅課長 李宗哲** 당연한 지적입니다. 서울시 담당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준 바도 있고 일부 조례도 개정하려고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金以煥委員님하고 동감입니다.

○**金以煥委員** 앞으로 꼭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 지금 입안된 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많습니까?

○**住宅課長 李宗哲** 이 자리를 빌어서 金以煥委員님이 지적하시니까 솔직하게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오기 전에 건축승인사항을 보면 지금 최대한 나가는 게 5층까지 승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충 옥탑이나 지층부분이 지상으로 올라와서 6층 이렇게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승인나간 거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를 할 수도 없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金以煥委員** 그러면 그걸 그대로 묵인합니까?

○**住宅課長 李宗哲** 그래서 저희들이 와서 승인을 내주는 사항은 4층에서 5층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金以煥委員** 입안된 사항을 적발해서 처벌을 하

느냐 아니면 묵인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어요.

○**住宅課長 李宗哲**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이미 건축 승인이 되어 가지고 건축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金以煥委員** 그냥 넘어가 주고 있다? 그런데 거기 적발된 사람들도 많더라구요. 지적된 사람들도 있어요. 모든 것을 하는데는 가능한한 형평성에 맞도록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李宗哲** 고려하겠습니다.

○**金以煥委員** 그리고 전에 우리 2대 의회 때부터 계속 하는 얘기입니다만 구청장 질의 답변 다 듣고 그랬는데 우리가 아까 무허가건물 얘기를 했는데 한 서너 평 되는 거 짓다 보면 옥탑도 짓고 어쩔 수 없이, 요새 업자들이 그러잖아요. 집을 지으면 셋돈 싹 뽑아가 버린단 말입니다. 셋돈 뽑아서 공사비로 가져가고 주인은 갈 데가 없으니까 옥탑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사는 수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실제로 구제하는 의미에서 적은 것이니까 우리가 도와주자 해가지고 구청장도 답변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는 쪽으로 하고 관계 과장님도 그런 것을 우리가 도와주겠다 했는데 요사이 보면 강제이행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사람들한테 나가고 있는데 우리 課長님! 맞습니까?

○**住宅課長 李宗哲** 일단 허가 내서 옥탑 늘어난 것을 건축과에서 하고 이것도 저것도 허가 없이 무단으로, 마구잡이로 짓는 거는 그런 무허가건물

○**建築課長 李漢求** 허가를 내서 준공 안된 건 저희가 처리하고 있고요 허가 이후에 별도로 달아놨든지 무허가로 달아놨든지 그런 거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金以煥委員**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허가를 내서 다 했는데 준공을 했는데도 조금 이렇게 달아놔서 해버리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住宅課長 李宗哲** 당초에 건축할 때 조금 면적이 넓다 그런 거는 준공된 그 범위 내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전에 외벽을 쌓지 않고 슬라브는 좀 나오고 옆의 벽체만, 나중에 준

공검사 받고 나서 벽체만 좀 나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항측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이 없고 그런 사항은 어떻습니까?

○**金以煥委員**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들은 좀 도와줄 수 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다?

○**住宅課長 李宗哲** 민원이 안 들어오면, 대다수가 이웃집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그런 게 아니면 저희가 일부러 나가서 꼭 철거할 필요는 없고 저 자신도 그럴 마음은 없습니다.

○**金以煥委員** 여기서 약속한 거는 속기록에 다 올라가 있어요.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제이행금 부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1년에 두 번도 나오고 한 번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2년에 한 번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잘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住宅課長 李宗哲** 그게 항측이라던가 저희들 정보로 해서 접수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金以煥委員** 아니 다 이행금을 냈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너는 나오고 나는 안 나오고 시시비비가 많이 있는데 구청에서 고지서 발부할 때 일괄 이렇게 처리합니까?

○**住宅課長 李宗哲** 저희들이 1차 조사를 합니다. 동을 통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는 건물이 있고 안 되는 건물이 있고 또 일단 철거되는 건물도 있고 해서 선별적으로 합니다. 일단 적발된 거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다 나가는데 연 1~2회 이상 나가지는 않습니다.

○**金以煥委員** 어떤 사람은 두 번씩 나왔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근거자료는 내가 가져오지 않았 습니다만 구두로 들어온 민원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1년에 2회 나가는 경우는 없다?

○**住宅課長 李宗哲** 네.

○**金以煥委員**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도로 공사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십니까?

○**住宅課長 李宗哲** 지금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

지구 16개 지구에 11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토목 직이 저희 구에 4명입니다. 그 4명이 모든 것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낮 시간에는 현장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오후에는 들어와서 행정 근무를 합니다. 저희 감독 공무원들이 현장 주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데 완벽하게 공사감독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金以煥委員**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안맞는 얘기에요. 직원을 한사람이라도 더 늘려서라도 그런 부분은 감독을 잘 해야 됩니다.

○**住宅課長 李宗哲** 당연하죠.

○**金以煥委員** 우선적으로는 업자들이 사장들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일하잖아요. 그런데 그 양반들의 횡포가 대단해요. 대단한 무슨 금의환향이나 한 것처럼 동네에서 우리가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일하는 사람이지 우리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고 딱 딱 씹어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관계과에서 그 사람들에게 사전에 이것은 해야 된다고 그러한 것을 홍보를 하든지 또 감독관이 나가서 항상 주재 못하고 있을 때에는 그것을 충분히 주지시켜서 잘못된 것을 시정시킨다든지 주민한테 불쾌하게 한다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공사하는데 자기들 편이야. 주변 사람들 생각지도 않아요. 자기가 공사한다는 과시로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오늘 아침에도 그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막 파서 제껴놓으니까 그 위로 지붕으로 올라가버리고 엄청난, 그 사람들 올라고 그러더라고요. 말 해도 말도 통하지 않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 하나뿐만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들은 것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가서 얘기해도 내가 사정이나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면 고분고분 얘기가 되는데 조금 이렇게 해 가지고 당신들 이것 나쁘죠? 잘못되었죠? 하면 대꾸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은 관계과에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住宅課長 李宗哲** 그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일단 공사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부 홍보를 하고 그 사항이 있으면 직접 전화를 해주시면

직원이 나가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업자에 대해서 공사감독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다시 시켜서 민원이 없도록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以煥委員** 내가 우리 동네를 주거환경개선지구 동네를 돌면 거의 그 사람들 얘기를 두세 사람은 꼭 합니다. 현장을 한바퀴 돌면 그러면 그 사람들 전혀 안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서 당신들 이렇게 하면 됩니까? 하면 그 사람들은 큰소리로 나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해버리고 고자세로 하면 그 사람들하고 싸울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적당히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말고 말고 했는데 그렇다고 그때그때 다 전화해서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 특별한 창신동뿐만 아니라 16개지구가 다 마찬가지로 일거라는 겁니다. 그 지형적인 여건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겠습니까마는 다 이것이 그런 실정일 거란 말입니다. 이러한 것은 어떤 경우에 처하더라도 부드러운 사람들이 되어 가지고 하고 두번째는 민폐를 끼치지 않는 최소한의 여러 사람 불평 안나고 민원이 없도록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住宅課長 李宗哲**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以煥委員** 자신 있으세요? 약속했습니다. 꼭 앞으로 그렇게 좀 하셔서 그 부분이 잘 돼서 주민한테도 좋은 칭송을 받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네요. 본 위원이 하려면 2시간은 해야 되거든요. 여지껏 기다렸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弼根** 金以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감사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질의를 여기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04分 會議中止)

(13時30分 繼續開議)

○**委員長 吳弼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예, 丁炳煥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丁炳煥委員** 丁炳煥委員입니다. 오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하시고 또 질문 지적내용이 공통된 점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아마 저녁 12시까지 할 것으로 생각하고 동료 위원들한테 제가 3시간만 할 것을 양해를 구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나눠서 합시다」 하는 委員 있음)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38쪽을 봐주십시오.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 점검대상 42건 건축허가 후 1년이상 경과된 '98년 허가분 그렇게 했고 그 밑에 '99년 실적에 '97년 허가된 장기 미사용 승인건 256건 점검 중 아마 54건은 승인이 되고 위법사용 승인건이 202건인데 위반 유형별로 여기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련의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을 않고 이렇게 지연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建築課長 李漢求** 공사기간이 길어서 준공이 안된 게 있고 그 다음에 자금 사정으로 착공이 늦어져서 준공이 안된 게 있고 그렇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런데 자금 사정 등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82년부터 '92년까지 아마 근 15년 간에 걸쳐서 이러한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그 특정건축물 이것이 왜 '82년인가 하면 '81년 이전의 위법건축물을 양성화해줬습니다. 그 이후부터

○**丁炳煥委員** 오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집을 지을 때는 건축관련 법규에 의해서 건축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러한 건축위법 사례가 나타나고 또 그것을 각 지역을 볼 때는 경관을 해치는 것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수요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관계공무원들

이 목인했기 때문에 이러한 건축물이 불법으로 들어섰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우리 건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예전에 저희가 건축현장을 보고서 허가를 해주고 준공을 해주고 했는데 근래에 와서 저희가 건축현장을 못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직접 나갈 때는 3일 전에 통보하고 나가라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건축 현장을 보지 않도록 하는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炳煥委員** 지금은 건축담당 직원이 현장에는 현재 답사를 않고 준공검사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준공검사를 합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지금 현재는 실제 감리한 건축사가 준공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을 봐가지고 준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도 못믿고 건축사도 못믿어 가지고 제3의 건축사 자기가 감리한 건축사가 아닌 제3의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을 보고 준공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아까 동료 위원들도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92년 1월달 이전 위반된 것은 과태료 연1회를 부과하고 이후에는 강제이행금 연2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하등의 건축법 규정대로 했을 적에는 이러한 강제이행금 소리가 지금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그래서 시장님이 지금 특별검사원 제3의 건축사가 하는 것을 특별검사원이라고 하는데 14만원씩 주고 점검을 하는데 위법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제3의 건축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달라질 겁니다.

○**丁炳煥委員** 앞으로 달라지는 것은 좋습니다. 각 지역마다 가령 연립주택이라든가 뭐랄까 건축법을 전부 위반하는 것이 관계공무원들이 목인하고 지금도 역시 건축물의 위반사례 증축이나 개축하는 과정에는 각 동사무소에서 직원들하고 협의하에 아마 증축하고 위법을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위법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

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李漢求** 예, 알겠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리고 감사자료 16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60쪽의 제일 하단에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철거대집행 계고서 발급현황이라고 했는데 발급 건수가 10건인데 철거는 어떤 경우에 철거를 했고 어떤 경우에 고발하고 추인허가는 어떻게 해서 불법으로 고발된 것을 추인을 해줬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162페이지입니다.

○**建築課長 李漢求** 무허가 건축현황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유인물에 발부건수가 10건입니다. 철거가 7건, 고발이 1건, 추인허가가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거된 것은 저희들이 강제집행한 것 7건은 이제 고발한 1건은, 철거는, 추인허가는 또 건축법규에 합법적으로 건물을 증·개축할 수 있는 범위 외에 같으면 관할동사무소에서 추인허가를 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합법적으로 추인허가를 받은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발 1건을 한 것입니다.

○**丁炳煥委員** 고발은 어떤 내용이길래 1건은 고발하셨는지

○**住宅課長 李宗哲** 일단은 저희가 강제집행이 안되고 자진해서 이행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고발조치를 한 것입니다.

○**丁炳煥委員** 7건은 철거를 했는데 1건은 철거를 명령했어도 안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고발했다? 그런데 추인허가를 2건을 낼 바에는 당초에 계고서 발부할 대상이 안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계고서를 보내고 추인허가를 내줬습니까?

○**住宅課長 李宗哲**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무허가건물 무허가 발생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관할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그것이 추인허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계고서를 했다 하더라도 추인허가에 대해서는 취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丁炳煥委員** 만약에 이것을 고발했을 경우에 관

에서 묵인해서 다시 준공을 내주는 경우는 없습니까?

○**住宅課長 李宗哲** 일단 고발된 것은 저희들이 추인허가가 될 수 없는 사유가 될 수 없는 그러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고발조치를 먼저 합니다.

○**丁炳煥委員** 알겠습니다. 16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증·개축 신고처리 내용이 '98년부터 '99년까지 증·개축 신고현황이 277건에 증축이 193건, 개축이 6건, 대수선이 48건 기타가 30건인데 대수선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대수선은 지금 기동보 3개를 철거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림벽 30m'를 철거한다든지 주계단을 수선한다든지 이럴 때 대수선이 되고 미관지구의 외장변경까지 포함됩니다. 개축은 그 범위를 넘어가는 것이고 증축은 면적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런데 대수선은 말로만 대수선이 지 새로 지으면 건축법에 의해서 그만치 건폐율이 줄어지기 때문에 말로만 대수선으로 생각하지 실제적으로 본 위원은 신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48건이 대수선을 했네요. 제가 딱 집어서 지적은 않겠습니다마는 대수선을 하는 것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벽은 그대로 놓고 다 뜯어버려요. 그래서 신축하려면 건폐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환경개선지구, 환경개선지구 했는데 그러나 백년대계로 볼 때 환경개선지구 대해서는 그 정책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저희 무악동 인근에 행촌동에 가보면 앞으로 머지않아서 다시 개발한다는 말이 나오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대수선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저희 입장에서 보면 지금 대수선이라는 것은 구조를 튼튼히 한다든가 이러한 입장이거든요. 증축같은 위윈님 말씀하신 제가 종로에 와서 보니까 노후건물이 30년이상 된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재해

를 대비한다고 하면 대수선이라도 해서 구조를 튼튼히 해주는 게 저희로 봐서는 안심하는 것이고

○**丁炳煥委員**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시면 부실해서 대수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은 부실해서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대수선이라고 그랬는데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실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대수선을 허가할 때는 충분히 타당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建築課長 李漢求** 예, 유념하겠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리고 16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인데 부과는 총 이행강제금 건축과태료 311건에 4억 9,046만 7,000원으로 했는데 징수 실적이 아주 부진합니다. 이행강제금 징수가 건축과태료 122건에 1억 6,674만 5,000원밖에 안되고 아직 해소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해소가 늦어지는지 담당자 어느 과장이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李宗哲** 주택과 소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건축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丁委員님 지적하신 대로 징수실적은 저희들이 적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송사건 처리절차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의신청하신 분에 대해서는 법원으로 이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빠지다 보니까 징수실적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러한 것을 부과를 했는데 안내신 분도 있고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내신 분들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이러한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현재 그렇습니다.

○**丁炳煥委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만 하지 사후 어떤 조치는 안해줍니까?

○**住宅課長 李宗哲** 일단 재산상 불이익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발조치라든가 이러한 것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빠른 시일 내에 해소토록 노력하시

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李宗哲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丁炳煥委員 16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66쪽에 저희 등 것 한번 지적하셨습니다. 부과 1건에 91만 2,000원인데 이것은 여기서 어떤 물건인지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만약에 답변해줄 수 없다면 서류로 제출해도 좋습니다.

○住宅課長 李宗哲 이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丁炳煥委員 16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무허가 건축물 현황 및 단속고발건수 '99년도에 적출한 112건하고 철거 50건, 고발 21건, 이행강제금 부과 27건 진행중이라는 것은 뭐니까?

○住宅課長 李宗哲 진행중인 것은 저희들이 현재 자진 시정토록 촉구하고 있는 단점입니다.

○丁炳煥委員 그런데 과장님! 감사 때에 위원님들이 지적만 하고 자료에 의해서 지적만 하고 답변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감사자료에 깨끗이 2000년부터는 진행중이 없이 고발하면 적출하면 반드시 다 해소토록 즉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住宅課長 李宗哲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丁炳煥委員 2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융자지원액 및 집행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 1년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 한 가구당 600만원에서 천만원까지인데 연리는 3%입니다. 이 대상 선별은 가령 세대주에서 자녀를 분가를 해가지고 새 세대를 만들어 가지고 전세를 구입할 때 그런 사람도 해당되니까? 선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주택자에 대한.

○住宅課長 李宗哲 이것은 일단 구청에서 융자신청자를 전산조회를 하게 됩니다. 해서 과연 이 사람이 주택 소유한 적이 없는지를 일차 먼저 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서 가령 영세민이나 3천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이나 해서 동에서 일단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심사 과정에서 선별을 잘 하시리라고 믿고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해주면 주택은행에 이자를 연3%만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아니

면 우리 구청에서 보조해줍니까?

○住宅課長 李宗哲 연3%만 합니다.

○丁炳煥委員 은행에서 3%만 받는다고요?

○住宅課長 李宗哲 예.

○丁炳煥委員 그것은 바람직한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8재건축에 대해서 사업위치 평창동 72번지, 74번지인데 재건축을 하거나 재개발을 하면 평형비율을 의무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평형을 다 큰 것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43평, 50평 이런데 33평들도 이해 당사자들이 위해서 33평을 허가를 내줍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이것이 의무비율로 33평을 짓도록 한 것입니까?

○住宅課長 李宗哲 재건축은 저희들이 평수를 임의 기준에 따라서 평형별로 지정이 됩니다. 기본 평형 세대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건축조합의 건축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조합원들이 이 평형을 위해서 이 평수를 허가를 내준 겁니까?

○住宅課長 李宗哲 예.

○都市計劃課長 張東祐 5층이하의 주택 재개발의 경우는 평형의 제한이 없습니다. 5층이 넘어서 6층이상 되는 것은 관계법규에 의해서 1종에 해당되는 평형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알겠습니다. 2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에 철거현황이라고 했는데 대상에 41건 철거완료가 23건이고 미철거는 어떤 사유로 인해서 현18동이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까?

○住宅課長 李宗哲 이것은 현재 보상이 진행중입니다.

○丁炳煥委員 서울시 보상이 진행중이라 그렇습니까?

○住宅課長 李宗哲 저희 구청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런데 왜 23세대는 이미 철거가 되었는데 그것은 보상이 완료되었고 미철거 18개 동입니까? 18세대입니까?

○住宅課長 李宗哲 동입니다.

○**丁炳煥委員** 18동은 지금까지 진행중입니까? 왜 똑같이 보상을 안고

○**住宅課長 李宗哲** 지금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보시면 청운아파트가 11동이 현재 보상중에 있고 낙산1지구가 금년 10월달부터 보상 진행중에 있고 기자아파트도 금년에 보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몇가구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 낙산 그래서 18동입니다. 현재 보상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일부 기자아파트라든가 이러한 것은 저희가 수용 재결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몇세대가 남아 있어 가지고. 이것은 낙산 공원화사업계획 도시계획 사업으로 시행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이제는 수용 결정해서 강제집행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丁炳煥委員** 알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빠졌습니다마는 무악동에 건축법 위반사건으로 2건의 진정서가 접수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住宅課長 李宗哲**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모르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건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까? 나중에 그러시면 서면으로

○**住宅課長 李宗哲**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가 말씀해 주시죠.

○**丁炳煥委員** 여기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대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한테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 질의는 그 지역의 원이 지적을 해서 단속한다는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인왕산이라고 하면 전국적으로도 명산이고 도심지에 위치한 인왕산인데 전국 무속인들이 와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그 단속을 몇번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전국에서 온 무속인들이 밤 늦게까지 곳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지금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데 저희가 시작한 것이 작년도부터 무속행위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종교에

관한 얘기니까 우리는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불법으로 산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 것을 청을 합니다. 무속이라고 하면 종교갈등이 있어 가지고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작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그 장소를 없애기 위해서 잣나무도 솜아다 심었습니다. 금년도 시작을 했는데 여름에는 적습니다. 한여름에는 적고 좀 늦은 봄 그리고 초가을 이 때가 많은데 국립공단에서 통제 구역이니까 거기는 헨스같은 것도 있고 그것만 전담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높은 산에서 하던 것을 단속하니까 산밑으로 내려오거든요. 이것 가지고 KBS에서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단속을 하려고 보니까 범상 참 애매합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들어와서 가만히 나가는 것은 통제구역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고성방가 소리 지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찰의 사항이고 들어가서 무슨 건물을 지었다던가 산을 훼손했다든가 나무 꺾질을 벗겼다든가 이러한 행위가 일어나야 되는데 가만히 대여섯명 모여 가지고 찬송가 부르는 사람도 있고 혼자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단속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도단속이라고 그러는데 파출소에 연계해 가지고 직접 파출소에 신고를 해서 사항이 좀 지난 것은 파출소에 의해서 경찰권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 경우도 실제 했고 우리가 한다는 것은 야간에 매주는 못나가도 일주일에 2회를 나가고 있거든요. 밤에요. 나가서 계도를 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금년도 가을에 우리가 가시있는 나무를 좀 심었어요. 산밑에다.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바윗돌도 굴리고 그러니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파괴 쫓는 식이지 내용을 만하게 크게 효과 나는 활동을 하지는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앞으로 계속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丁炳煥委員** 우리 課長님! 계속 지도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비근하게 자릿세를 받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리를 제공해주고 전국에서 오는 무속인들한테 자릿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걸 잘 점검해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알겠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리고 광고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광고물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간판세를 어떻게 부과하고 있습니까?

○都市計劃課長 張東祐 도로점용료에 해당하는 것은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丁炳煥委員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 청진동 재개발 건에 대해서 여기 감사하고는 무관합니다만 본 위원한테 민원이 누차 접수됐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담당과장한테 물겠습니다. 11월 20일자 진정서 받은 적 있죠? 그 내용은 다 넣었습니다. 회신은 어떻게 해줬습니까? 청진동으로 말하자면 '79년도 10월에 도시계획선이 서울시부터 끌어 가지고 2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고 서울호텔 내에 가서 보면 전부 루핑집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 지역은 빠른 시일 내에 재개발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은 엄청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주민들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수복재개발을 완하고 있고 단 구청과 협의해서 현실에 맞는 재개발을 원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計劃課長 張東祐 청진동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79년도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서 현재 제일은행 본점과 송죽사에 서울은행 건물이 지금 완공됐습니다. 총 19개 지구 중 17개 지구는 아직 재개발 시행이 안 되어 있고 제일은행과 서울은행 2개만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 재개발법에 의하면 사업재개발구역이 지정된 후 2년 동안 사업 시행인가가 나지 않을 경우는 자동 실효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진동 재개발은 현재 2개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된단든지 실효된단든지 하는 법규적인 사항은 전혀 발생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79년 재개발구역이 지정되고 재개발을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제 전임과장이 청진동 재개발을 종합적으로 하나의 큰 프로젝트로 개발하려고 노력했으나 추후에 온 IMF 경제상황이

라든지 주민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의 재개발방식이 현재 다른 구역으로 재개발하는 것과 똑같이 블록별로 하나하나 재개발을 수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일부는 재개발을 반대하는 분도 있고 또 찬성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개발구역에 대해서 해제되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빨리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수복재개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수복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보수나 약간의 변형을 가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러기에는 청진동이 너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블록이라도 빨리 재개발을 시행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丁炳煥委員 재개발을 한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만 지구 285명 중 195명이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 課長님이 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민원을 어떻게 해서라도 잠을 재워서 민원인들을 설득시키고 이해가 가게 하는 홍보가 부진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計劃課長 張東祐 많은 대다수의 반대자도 제가 알기로는 명확한 반대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 분씩 다 얘기를 해보면 저희가 그분들을 직접 상대해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과에 오는 민원인들 경우는 반대하는 의견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재개발법에 의해서 재개발을 해제하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개발을 해야 되고 저희가 그래서 6지구, 지금 현재 청진동 17개 중에서 6지구는 지금 재개발 공람 공고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재개발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반대하는 민원인들은 어떤 민원서류라든지 일 반적인 어떤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충분히 설득을 했고 그리고 제대로 아는 분들은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에 해당하는 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러니까 이거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가서 설명회를 한다던가 해서 잠재울 생

각은 없습니까?

○都市計劃課長 張東祐 저희가 공람 공고도 했고 주민설명회도 몇 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업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사업에 대해서 자기네 나름대로 그 프로젝트를 설명했고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것은 청진동 전체를 재개발 할 경우는 선 투자로 약 1조에 해당하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부담할만한 시공업체가 현재 없을 뿐더러 아시다시피 부채비율 200%를 올려 말까지 맞추라고 하는 국정 현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 시공사에서는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 6지구에 해당하는 것은 거기 관련된 분들이 시도를 하고 있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블록별로 개발할 경우에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지금 말씀이 재개발지역에 공람을 다 거쳤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무악동의 상계지역도 공람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디 게시판에다 공람 공고만 해버리면 실제 당사자들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람을 했더라도 반대자들을 개별적으로 설명회를 가져서 이 지역은 어떠한 재개발을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설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기는 무악동에 살지만 저한테 엄청난 민원이 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드린 확인하여 주십시오 19개항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앞에, 관계공무원 앞에서 낱낱이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일일이 설명을 안했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민원인들이 없도록,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을 택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課長 張東祐 알겠습니다.

○丁炳煥委員 제가 질의할 사항은 많습지만 동료위원을 생각해서 이만 질의하고 기회가 있다면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弼根 丁炳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金福同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福同委員 金福同委員입니다. 220페이지 아

가 광고물에 대해서는 소관이 아니라고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광고물의 어떤 것을 담당하십니까?

○都市計劃課長 張東祐 광고물 허가사항 그리고 광고물이 비가 온다던가 해서 무너질 위험이 있는데 안전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광고물이 불법으로 지금 운영되었을 경우 그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98년도에 1,03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거 다 받아들였습니까?

○都市計劃課長 張東祐 네.

○金福同委員 그리고 금년은 조금 늘어서 1,110만원인데 금년은 몇%나 증가했습니까?

○都市計劃課長 張東祐 상당히 많은

○金福同委員 젊고 폐기 넘치니까 잘 하셔서 잘 버시는군요. 그럼 현수막은 누가 합니까?

○都市計劃課長 張東祐 저희 과에서 합니다.

○金福同委員 잘 됐네요. 종묘공원을 가보면 종로구청 현수막이 무질서하게,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 보셨습니까?

○都市計劃課長 張東祐 봤습니다.

○金福同委員 현수막은 며칠만에 수거를 합니까?

○都市計劃課長 張東祐 행사기간이 있을 경우는 그 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계속 설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金福同委員 행사가 끝났는데도 붙어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都市計劃課長 張東祐 시간적으로나 저희가 대응을 잘 못해서

○金福同委員 종로구청 현수막을 붙일 때면 어디서 허가 같은 것도 받지 않고 아무 데나 마구 갖다 부칩니까?

○都市計劃課長 張東祐 관련허가를 받고 갑니다.

○金福同委員 허가 받고 하는 거 맞습니까? 말씀을 분명히 하십시오.

○都市計劃課長 張東祐 저희 구청에 해당하는 것은 허가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허가를 받고 합니다.

○**金福同委員** 예를 들어 종로5,6가동 관내에서 개인이 현수막을 붙였다면 날짜와 관계없이 철거 하지요?

○**都市計劃課長 張東祐** 철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관에서 하는 거는 날짜가 지나도 계속 붙여놓고 무질서하게 수십 개를 붙여놔도 상관없이 없고 주민이 하나 붙이는 것은 즉시 철거를 해야되고. 이거 잘못된 거죠?

○**都市計劃課長 張東祐** 저희가 현실적으로 계속 현장을 돌면서 플래카드나 현수막 같은 거를 다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도 적고 현실적으로,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점검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金福同委員** 현수막 색도 같은 건 상관없습니까? 빨강, 파랑으로 3색, 5색이라도

○**都市計劃課長 張東祐** 바탕만 흰색으로 1/2만 넘지 않으면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네. 구청에서 나가는 거는 허가 안 내도 무질서하게 맨날 붙여놔도 괜찮고 개인이 하나 붙이는 것은 가서 꼭 잘라야 되고. 참 좋은 일입니다. 그 다음 간판허가를 내주죠? 종로거리에 간판이 무질서하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都市計劃課長 張東祐** 네.

○**金福同委員** 대책은 있습니까?

○**都市計劃課長 張東祐** 지금 광고물에 대해서 양성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업소에서 몇 개에 해당하는 일정한 부분이 아니면 나머지는 다 철거를 하도록 독려를 하고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종로5가에 가면 내가 신고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한판인데 상, 하, 좌, 우 할 것 없이 7개가 붙어있는 곳을 봤어요. 이렇게 무질서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나라 보다도 미개한 북경에도 상당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거기 가서 관찰하기에는 간판이 무질서하지도 않고 정연하게 한 건물에 한 간판을 하는데 아주 멋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보다도 후진국이라고 하는 데 가서 배워야겠더라고요. 하물며 몽골에 가서도 그걸 느꼈어요. 국민소득이 100불이 조금 넘는 나라도 간판이 정연하게 붙어있는데 유독 1만불 시대에 육박한 우리 나라가 무질서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課長님! 젊고 패기 넘치고 우리 종로구청 과장님 중에서 굉장히 젊고 엘리트라고 들었는데 그런 걸 발견 못하셨습니까? 과장님 오시고부터 간판이 더 무질서해졌어요.

○**都市計劃課長 張東祐** 저희가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말까지 과태료를 매기고 그 관련된 행위에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이면도로에 가면 간판이 많다 못해서 입간판까지 도로 중앙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금 나하고 같이 돌아봐도 10분내에 50개는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은 정리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옥외간판이라고 해서 전자로 된 간판에 종로소식지가 나오고 있죠? 그건 종로구청에서 매월 얼마씩 지급을 합니까? 무른가요?

○**都市計劃課長 張東祐** 공익광고는 무료인 걸로 압니다.

○**金福同委員** 종로구에서 압력을 넣어 가지고 무료로 하는 건 아니죠? 그 사람들 1분 광고 나가는데 엄청난 돈을 냅니다.

○**都市計劃課長 張東祐** 만약에 하루에 100에 해당하는 광고가 나간다면 25%에 해당하는 것은 공익광고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종로구청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중앙정부에 해당하는 공익광고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다음은 간판 조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요 9시 이전에 나와서 종로거리를 보십시오. 빨강, 파랑 아주 오색이 찬란한데 조명도 관찰을 해서 한 색으로 한다던가, 어떻게 예쁘게 한다던가 이렇게 노력해 보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경도 조명만은 멋있게 했더라고요. 심지어 돌아다니는 거리에서 진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간판을 해놨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수입을 해서라도

멋있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래 가지고 아름다운 종로, 살기 좋은 종로를 만들겠습니까? 우리 종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뽑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판에 치어서 거리를 다니지 못할 정도인데 어떤 사람들이 조사를 해서 이 종로가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청와대가 가까워서 그럴까요?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까. 나가서 살기 좋은 아름다운 종로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弼根 金福同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吳錦南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錦南委員 吳錦南委員입니다. 적선동 156-1 목산빌딩이라고 있습니다. 종로구도정 58422-800 '98년 4월 23일호에 의거 건물 철거지시 및 건축물 사용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쪽에 보면 서울시경 있는 쪽에서 보면 땅이 꺼지고 건물 자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산세나 도시계획서에 일체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인데 언제쯤 철거하려고 이렇게 놔두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課長 張東祐 목산빌딩은 '97년도 금이 가기 시작해 가지고 저희가 시정조치를 한 건물입니다. 현재 안전검사를 한 결과 안전 E급이 나왔기 때문에 즉시 철거 대상입니다. 저희가 철거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그 이후 한달 정도 이후에 IMF가 왔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매달 안전점검을 계속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철거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 입장에서도 철거비용이 12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철거비용이 마련되면 철거하고 다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축주가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관에서는 그 건물의 안전이라든지 건물의 전체적인 상황을 계속 검토하고 있고 한 달마다 매번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도로에 해당하는 것은 점검해본 결과

목산빌딩에 의한 침하가 아니고 도로시공을 하면서 옆에 해당하는 다른 건물과의 관계 때문에 나오는 침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토목과에 그거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저희가 공문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안전점검만 해가지고 무마가 돼서 다행히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12억이란 예산이 주어져서 철거를 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허송세월 아닙니까?

○都市計劃課長 張東祐 그 위에 중량을 받고 있는 하중부분이 있는데, 아랫부분을 계속 눌러주는데 그 하중이 큰 물체는 저희가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는 당장 없고 하루 빨리라도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도심 재개발구역에 해당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땅을 사거나 건물에 어떤 조치를 하지 않는 한은 저희가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렇습니까?

○都市計劃課長 張東祐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吳錦南委員 상당히 위험한 건물이니깐 예를 좀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인데 평창동 북악맨션 재건축사업 사전승인부터 사업 승인까지 관련 각 과 협의사항 및 군협의내용서, 사업결정의 구체적 내용, 사업계획 승인 내용, 변경승인 내용 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사보호 시설구역인데 과연 10~14층까지 나오는 지역입니까?

○住宅課長 李宗哲 이게 '97년도에 군대하고 일단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합의각서를 체결했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런데 북악맨션 재건축조합 그 자리에는 사실적으로 보면 우리 종로구에서나 시에서 볼 적에 이런 고층을 줄 수가 없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허가를 내주고 얼마 안돼서 서울시에서 고도제한을 했다. 쉽게 얘기하면 고도를 더 이상 제한을 해버렸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주민들이나 지역에 있는 아니면 우리 종로구의 일부 지식층들이 뭐가 있지 않느냐? 군사도 사실

제대로 되지도 않는 지역에 군사보호시설지역에서 이런 고층이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허가를 내줄 적에 과연 군사보호구역이지만 거기서 OK 했다 하더라도 우리 종로구청에서는 막을 수가 없었던 모양이죠?

○**住宅課長 李宗哲** 그 당시 도시계획 내용으로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최고 고도 지구지정이 조금 늦었습니다.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데 일찍 되었다면 이것마저 사전 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승인을 내줄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되었을 텐데 그 당시 도시계획 내용으로는 이렇게 승인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허가를 적법하게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리고 171페이지 착공 전 지적경계 측량 실시해서 도로 기부채납 부분에 대하여는 63㎡당가 그런데 도로공사 완료 후 토지분할 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로부분으로 완전히 토지분할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住宅課長 李宗哲** 이거는 일단 사업이 다 결정되면 사업승인이 들어올 때 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할거는 서울시면 서울시 종로구면 종로구청에 등기부상까지 다 넘기고

○**吳錦南委員** 건물이 완전히 됐을 때 나오는 거죠?

○**住宅課長 李宗哲** 그렇습니다.

○**吳錦南委員** 다음은 청진지구 재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진지구가 지난 우리 임시회 때도 반대의사를 가지신 위원장이나 총무 세 분이 오셔서 의견을 제시해줬습니다. 또 그 분들 얘기 들으면 그 분들 얘기대로 맞는 것 같고 丁炳煥委員 말씀과 같이 또 청진동은 개발을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청진동개발이 어려운 상태라고 이렇게 볼 적에 내년 6월경에 소방서가 남산 쪽으로 이사를 간다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방서가 이사가면 청진구역을 재개발하기 위해서 보다는 우리 종로구청이 건물을 먼저 개발해서 청진동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모델케이스로 보여준 다음에 청진동을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計劃課長 張東祐** 청진동 재개발에 해당하는 문제는 저희 구에서 처음에는 전체를 종합적으로 지하까지 통합을 해서 개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주민 전체의 호응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거를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만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현재 다른 데 건물 짓는 식으로 하나하나 블록별로 건물을 다시 지으려고, 말하자면 계획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7개 지구 중 6지구에 해당하는 분들은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람공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민원에 해당하는 분들은 서너 분이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 분 말씀대로는 예전에 종합개발을 하는 것 자체는 반대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주민과 협의해서 블록별, 지구별로 개발을 해라하는 식으로 내려왔고 저희도 그에 대해서 1개 지구별로 개발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하나하나 개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전 그런 뜻이 아니고 청진동 개발에 주민들 여론이 어려워지면 우리 종로구청 소방서가 이사간다고 하니까 우리 구청을 먼저 개발에 들어가자 이거죠. 그래서 시범모델을 해놓다 보면 청진동도 개발이 빨리 이뤄지지 않겠나. IMF 오기 전에도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종로구청을 개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안이 그때 당시 나왔었는데 첫번째는 일부를 분양해서 자기네들이 건축비를 빼간다. 둘째는 20년 사용하고 반납하겠다 하는 안을 가지고 설명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청진동만 자꾸 재개발에 대해서 논의할 게 아니라 우리 종로구 자체도 건물이 협소하고 그러니까 우리 종로구도 개발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 課長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都市計劃課長 張東祐** 우선 제가 알기로는 조

혼자 할 문제도 아니고 청장님하고 전체 부서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에 해당하는 청사의 경우 민자유치방식이라든지 그 다음 제3섹터방식이라든지 이러한 방식을 취한 청사는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단 도봉구청이나 금천구청을 청사를 짓고 있는 부분을 자기 구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또는 서울시에 보조를 받아서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방식은 민자유치라든지 그런 방식인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그러한 방식을 추진한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구요. 그러한 방식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이 지역에다 건물을 짓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그 지역은 또 재개발지역은 아닙니다. 저희가 원 소관대로 한다면 건축과장님 소관인데 전임과장님이 그러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러한 방안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구에 있는 자금사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예전에 청진동 재개발을 하면서 큰 종로구청을 지었으면 하는 그러한 방식이 있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종합개발이 안되면 한 블록별로의 재개발로는 구청을 다시 지을 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잘 알겠습니다. 210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 마는 거기에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 세보증금 융자지원액을 보면 '99년도에는 14억 8,2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11억 정도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50%도 현재 지원금이 안나간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볼 적에 연3%라고 하면 굉장히 싼 이겁니다. 홍보 부족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또 융자조건이 조금 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2년 이내에 일시 상환했다가 단 전세계약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하다. 이 자체가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를 2년 이내라고 하는 것

을 달리 바꾸는 방법과 일시상환과 또 1회에 한해서 연장 가능하다는 것 자체 조례를 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서는 이 조례안이 지금 서민들을 위한 융자금 600만원, 1천만원 하면 어떻게 보면 적은 액수지만 서민들한테는 큰 돈이거든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더 오래 쓸 수 있을 정도로 만들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住宅課長 李宗哲 예, 알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조례사항이 아니고 은행과 서울시와 저희 구청간의 어떤 관계입니다. 이것은 건설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吳錦南委員 참고로 해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동네는 2건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싼 이자임에도. 다음에 219페이지 형질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이전에 저희 의원들 쪽에서도 토지 형질변경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해도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해서 그때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민원 및 장기간 공사 중단 및 토지 형질변경 허가현황이라고 있는데 이 형질변경을 한번 서류를 해서 올려서 심의를 하게 되면 몇개월만에 또 다시 형질변경을 자료를 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까? 한 문건에 대해서.

○都市計劃課長 張東祐 그것은 어떤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러면 토지 형질변경을 허가를 해서 올릴 적에는 그 많은 상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올릴 텐데 지금 현재 4번, 7번, 3번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그 내역을 보면 사실 별 것도 아니에요. 평수 늘린 것도 좀 있고 왜 이렇게 7차례까지 올릴 이유가 있었습니까?

○都市計劃課長 張東祐 이 지역이 상당히 말쑥이 많은 지역인데 처음에 심의할 경우는 상세한 계획이나 이러한 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 하수도나 기존 공공시설물의 접속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저런 사정에 의해서 처음에 들어

은 계획도하고 형질변경 나간 어떤 조건상에 문제하고 차이점이 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보완을 시킨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올렸을 경우 어떤 문제라든가 관련된 보완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심의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러면 여기 230페이지를 보면 서울시 감사나 조치사항에 보면 서울시 감사 1차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나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야기된 것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형질변경이 7차례나 변경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주민들이 의아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무허가광고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金福同委員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느 분은 광고를 붙이고 종로구청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광고를 떼는 현상이 지금 생겨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간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길거리 어디에나 보면 스티커도 붙어 있고 옷 80% 세일도 붙어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붙어있는 주소나 전화번호가 있는 것을 찾아서 그분들한테 그 비용을 받아낼 수 있도록 앞으로는 해야 됩니다. 붙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익을 보고 떼는 것은 우리 종로구에서 인원을 동원해서 떼다보니까 길에 있는 벽 자체도 지저분해지고 예산도 들어가고 왜 이익은 그분들이 보면서 예산은 우리가 들어가면서 그것을 철거해야 되고 그 붙어있는 것을 떼야 되는가, 스티커도 붙어있는 것은 아주 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요?

○**都市計劃課長 張東祐** 저희 입장에서 충분한 인력이라든가 어떤 장비가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추적을 해가지고 때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티커를 나중에 발견해서 떼 후에 그 스티커를 붙인 업체나 개인한테 저희가 과태료를 매깁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그런 광고물을 많이 떼어야 된다고 생각은 있

습니다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 요즘같이 PR이 강조되는 시대에 일반 개인 입장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다보니까 저는 그러한 광고물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자기를 알리는 자기 제품을 알리는 행위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면서 적법한 어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종로가 또 중심지이고 대한민국의 상업적 행위가 거의 대부분 일어나는 도시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하여간 열심히 발로 뛰면서 광고물을 단속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그것은 어느 지역을 가보면 의류판매 아니면 어떤 기타 자기네들의 광고효과를 노리면서 하나의 장삿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철저히 그것을 현장을 가서 사진 찍고 부과할 수 있으면 부과해서 그분들의 이익이 아니라 또 우리가 이익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가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종로거리는 깨끗한 거리가 되지 않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재정비 222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 종로구는 지금 76건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건교부나 행자부나 서울시에서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까마는 76건이나 되는 우리 종로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재정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都市計劃課長 張東祐** 현실적으로 지금 공원이 있고 도로도 있고 여객자동차 정류장 등등 관련된 도시계획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이나 여객자동차 정류장 그 다음에 학교에 해당되는 것은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결정이나 변경 그 다음에 해제에 대한 권한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 입안을 해서 이러한 공원이나 여객자동차 정류장, 학교는 필요가 없다 저희가 입안할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립니다. 도로에도 폭이 15m 미만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입안해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로를 충

분히 검토를 해서 이 도로가 필요가 없다든지 그리고 별 공공성이라든가 그러한 것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해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고 그리고 꼭 필요한 도로라든가 공원이나 이러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저희가 생각할 때 하나 예로 옛날에 도로같은 경우 마구잡이로 해제한 결과 맹지나 어떤 출입이 안되는 개인 집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도로나 공원을 면밀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예산은 우리 종로구 예산으로 할 계획입니까?

○都市計劃課長 張東祐 구에서 결정하는 것은 보통 구 예산으로 하고 시에서 하는 것도 상당수는 구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됩니다. 시에서 다 보조해주는 것은 아니고

○吳錦南委員 지금 어느 일간지를 보니까 50%는 정부 차원에서 하고 5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얘기들이 나도는데 우리 과장님은 구 예산으로 한다면 상당히 많은 텐데

○都市計劃課長 張東祐 중앙정부에서도 그만한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낙산공원화 사업같은 경우 이삼백억을 들여서 집행하고 있고 일반 간선도로같은 것은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것만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다음은 상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죠. 구청장님 시정연설에 지난번에 들으니까 상세계획을 3군데를 2000년도에 확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확정이라는 것이 어떠한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복궁지역은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해제건의로써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금년내에 해제로 지금 되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능력

부족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해제를 안해주려고 그러는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해제를 해주어야 내년도에 집도 수리하고 집도 짓고 재건축도 하겠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 시간만 지연시키는 것을 보니까 안해주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물론 민원이 일부 적선동 주민 민원인이 시장님을 면담하고 한 것을 나중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민원인이 직접 가서 면회하고 거기 준주거지구로 해달라 이러한 것을 시장님한테 확답을 듣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이 야기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상세계획이 경복궁구역이 제1호로 해제지역으로 서울시에서 올라간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都市計劃課長 張東祐 지금 상당부분이 조정된 경복궁구역이 다 해제된 것은 아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제 변경이 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많이 변경이 되는 건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그 공람된 자체로서 일부는 해제되고 일부는 상세계획으로 묶이고 일부는 상업지구로 되고 그것은 언제까지 될 것 같습니까?

○都市計劃課長 張東祐 시에서 제 생각에는 상세계획 자문을 왜냐하면 상세계획이라는 것이 경복궁구역도 135,000㎡고 교남, 무악도 200,000㎡고 동대문도 600,000㎡로 그만한 큰 면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처리하는 것이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자문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걸러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11월달에 한번 상세계획 자문을 받다보니까 저희는 넉넉하게 올해 말에 끝날 줄 알았는데 한번 자문을 받다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년 1월달 내에는 최소한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都市計劃課長 張東祐 예.

○吳錦南委員 금년말까지 된다고 해서 홍보를 했는데 또 가서 1월달이라고 홍보를 하고 보면 내년

연초에 구청장님 동정보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안되면

○**都市計劃課長 張東祐** 제 생각에는 잘 되면 12월말이나 최소한 1월말로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吳錦南委員** 과장님의 꾸준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또 묻겠습니다. 사직동 1,2지구 도심재개발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직1지구는 지구지정이 되었고 2지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과장님은 제시를 해 나갈 것인지 주민들 의견이 차이점이 있고 그것이 확실하게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해줘야 주민들이 거기에 맞는 도심재개발권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주민들 대표자들한테 설득력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소신있는 답변을 한번 해주시면 제가 주민들 대표들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都市計劃課長 張東祐** 지금 사직1구역에 해당되는 것은 지난번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14층 정도로 해가지고 공공주택식으로 재개발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신문상에 사직동에 재개발이 된다면 그 주위에 경복궁이라든가 이러한 보존가치가 있는 것이 많은데 재개발 해도 되겠느냐 그러한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결정고시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끝나는 대로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거기는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직2구역에 해당되는 것은 그 지역이 풍치지구가 열려 있기 때문에 해제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그 지역을 전제로 해가지고 고층 개발을 할 경우에는 곤란하다는 의견이 서울시에서 지금 내려왔고 서울시의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아마 상정이 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는 풍치지구는 건드리지 않고 나머지 지역을 갖고 재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그런 생각을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럴 경우는 주민들이 재개발하기에는 상당히 면적이 좁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저도 딜레마에 상당히 빠져있는 입장이지만 어차피 앞으로는 재개발을 할 경우는 자기가 돈을 내서 자기가 어떤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과거와 달리 쉽게 이렇게 개발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풍치지구가 없는 부분을 자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오면 추후에 다시 검토해서 서울시로 상정을 해보겠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러면 지금 사직지구도 현재 결정고시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사직1지구도 말입니다.

○**都市計劃課長 張東祐** 사직1구역은 결정고시를 서울시에서 아직 안했습니다.

○**吳錦南委員** 그것을 추진을 우리 과장님이 빨리 해주셔야죠?

○**都市計劃課長 張東祐** 저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吳錦南委員** 지금 결정고시가 안났다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봤을 때 경희궁이나 사직공원을 많이 다니면서 상당한 거리를 띄우고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정고시가 안되고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일어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힘을 쓰셔야지 안쓰시면 괴로움을 당하실 것 같은데

○**都市計劃課長 張東祐** 많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吳錦南委員** 이 지구는 풍치지구를 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都市計劃課長 張東祐**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어떻게 할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吳錦南委員** 23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96년, '97년 이렇게 쪽 나와 있습니다. '96년 제9차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이것이 맞습니까?

○都市計劃課長 張東祐 맞습니다. 1년에 1차부터 쪽 올라갑니다.

○吳錦南委員 '96년에 제9차를 했는데 이게 맞아요?

○都市計劃課長 張東祐 1월부터 9번째 해당되는 겁니다. 12월이니까요.

○吳錦南委員 끝으로 해서? 그런데 그 밑에는 '97년인데요?

○都市計劃課長 張東祐 '97년 처음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1차 '96년도는 9번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했고

○吳錦南委員 '97년도에는 1차를 한번 했고 2차를 했고

○住宅課長 李宗哲 '97년도에는 7번 했고 '96년도에는 9번 했다는 얘깁니다.

○吳錦南委員 그런 얘기군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232페이지 우리 玄壽漢委員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질의는 하겠습니다. 석과정 3필지 중 임야 1필지와 2필지 형질변경에 대한 서류 일체, 감사원, 시, 구 감사지적사항 현황이라고 해놨는데 사실 읽어보면 감사지적사항이 없거든요. 없는데 1필지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그 임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자는 없습니까?

○都市計劃課長 張東祐 하자는 없습니다.

○吳錦南委員 여기에 보면 도로상 심의할 때 쪽 볼 적에 반려사유 233페이지 맨 끝쪽에 보시면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신청지는 간선도로변의 미개발 토지로서 암반 및 임상이 양호한 부분은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토공을 최소화토록 택지조성계획을 축소하여 재수립한 후 재심의토록 결정 이렇게 해놨는데 그 후에도 보면 소나무도 보존해라 기타 여러 가지 도로도 6m로 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태죠?

○都市計劃課長 張東祐 예.

○吳錦南委員 지금 현재 완전한 어떤 결과적인 심의를 볼 수가 없네요?

○都市計劃課長 張東祐 그런 상황입니다.

○吳錦南委員 일단 형질변경이나 이런 것은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都市計劃課長 張東祐 예, 그렇습니다.

○吳錦南委員 우리 玄壽漢委員님이 기다리시는 것 같으니까 그만 하고요. 이상입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吳弼根 吳錦南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玄壽漢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玄壽漢委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지금 세 과장님 건축과장님, 도시계획과장님, 건축과장님은 저희 구에 오신 지 1년 되어 가죠? 어떻게 세 과장님은 저희 구에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이나 종로구 전체에 현황파악은 좀 하셨어요?

○住宅課長 李宗哲 전체에 현황파악 했다고 하면 어폐가 있고 대충 업무 추진할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년 가까이 되었으니까 위원님들마냥 골목 세세한 것은 몰라도.

○玄壽漢委員 답변하신 것 보니까 대충은 파악을 하고 계시길래 제가 민원사항 한 파에 한가지씩만 여쭙겠습니다. 민원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제 앞에 계신 건축과장님부터 여쭙볼게요. '99년도부터 건축허가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민원인이 건축과에 접수를 하면 그것이 왔다갔다 해서 제가 파악하기가 만약에 내가 직원인데 내가 받았다고 하면 그 전에는 동담당이 있으니까 동담당한테 접수시켜 가지고 심의하고 계장, 과장 이렇게 결재 받아서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으로 알았는데 심의 시행규칙이 바졌는지 건축법규가 구조례는 무시하고 시 조례로 해야 된다고 언제 그렇게 되었는지 요즘 건축허가 내는 민원인이 내 가지고 처리하는 과정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建築課長 李漢求 건축허가가 접수되면 지금 민원인이 민원실에 접수하면 저희가 가져와서 저희는 허가처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 담당자가 바뀝니다. 부조리 때문에 매일 담당자를 바꾸고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은 여러 사람이 토목이라든가 여러 사람이 검토해야 될 것은 나눠 가지

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옛날에 협의하던 것을 특수한 그린벨트나 이러한 것은 협의의 하고 그 외의 사항은 일괄 검토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玄壽漢委員 그러면 접수한 것을 가지고 건축 아무나 바뀔다고 그러셨잖아요? 맡아 가지고 그 말단이라고 하면 안되지만 담당직원이 계장이나 과장 결재 없이 그대로 허가를 내주나요?

○建築課長 李漢求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과거에 2,000㎡, 4층이하 같으면 계장이 전결입니다. 이 관리대장 전환이 용도변경 조그만 용도변경은 담당자 전결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사항 일정규모 이상이면서 허가사항이면 계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玄壽漢委員 과장은?

○建築課長 李漢求 저한테 오는 것은 2,000㎡이상으로서 5층이상 그 다음에 연면적은 2,000~5,000㎡까지

○玄壽漢委員 국장 결재는 없나요?

○建築課長 李漢求 면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玄壽漢委員 그것이 한가지 민원이 자꾸 발생해서 감사원까지 그것이 진정이 들어가고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그러면 건축허가 서류를 받아 가지고 현장에 나가봅니까? 안나가 봅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현장을 못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玄壽漢委員 언제부터 규정이 되어 있어요? 언제 말고라도 무슨 규정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현장에 못나가게 된

○建築課長 李漢求 그것은 건축법에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 되어 있는데 건축법 제23조에 건축허가시에는 조사점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건축사가 점검을 해줍니다. 건축사가 해오면 그것을 우리가 서류 검토 후 서류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玄壽漢委員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질문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정경유착이 아니라 민

정유착인가, 현장에 나가보면 직원들 돈 한두 푼 받아먹고 할까봐 근절대책을 세웠는데 우리 종로구에서 평창지역 부암동, 신영동, 홍제동, 구기동, 평창동 이 5개동은 평창권역이라고 하는데 제각각 국장이나 한 금년 말고 작년, 재작년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반드시 현장을 보고 건축허가를 내줘라. 책상에 들어온 것은 도면만 가지고 봐. 그러면 면적하고 뭐가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세검정은 옛날에 과일밭이었기 때문에 6·25사변 이후 축대가 2, 30m씩 쌓여있던 데야. 석축으로 거기다 3층, 5층 빌라를 허가를 내주니 하중을 못이겨서 여름마다 집이 붕괴를, 그런데 이번에도 거기는 산비탈이 돼서 GL인가 이게 도면에 안 나타나는 거든. 도면에 표시가 안되어 있죠? 그럼 이런 비탈에 허가내주는 사람 마음이야. 이 꼭대기에서 1층 단면이나, 1층 중간이나에 따라서 층수가 높아져. 3층짜리 내주면 이게 6~7층이 돼. 이번에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감사원에 진정이 들어간 거야. 그런데 아무리 부조리 부조리해도 나는 이해가 안가. 공무원들이 나가서 2~300 받아먹고 집에 가서 어린애 봐? 이럴 공무원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제가 묻는 핵심은 거겁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바닥 창신동 평지지역 있죠? 우리 종로바닥 평지지역 있죠? 이런 데는 도면보고 해도 된다고요. 건축법 법규에 맞으면. 그런데 세검정지역은 현장 안보면 그건 안돼. 축대 쌓은 게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축대 쌓은 지가 40~50년 됐는데 말이야. 여기에 3층, 5층 하중이 올라가기 때문에 작년에도 몇 번 무너졌죠? 금년에는 다행스럽게 소규모로 무너지고 말았지만. 그래서 이걸 市長이나 局長, 副廳廳長한테 우리 廳長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려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課長님! 별도 지역은 따로 관리할 수 없을까요? 동담당제는 폐지가 됐다고 그러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저희도 답답한 게 지금은 개인이 집을 짓는 것도 현장에 나가려면 사흘 전에 연락을 취하고 공문으로 주고 그러고 나가라는 판이거든요.

○玄壽漢委員 사흘 전에 연락하면 돈 준비하지. 3일 동안. 그냥 불쑥 나가봐야지.

○建築課長 李漢求 왜 이 말씀을 드렸나 하면 될 수 있는 대로 현장에 나가지 말아라

○玄壽漢委員 課長님 나무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되겠더라고요.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위험한 건축물이 자꾸 생기고 그러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앞으로 허가가 들어오면 축대 건에 대해서 엄격하게 챙기겠습니다.

○玄壽漢委員 지난 4~5월에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재개발 입찰 추진하고 10년 동안 추진해서 신영동 158번지 일대 붙어있는데 거기다가 도면만 보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담당 불렀더니 도시정비과 어찌고 하다가 물어봤대. 서류를 보내야 서류도 답해주지. 전화로 물어봤다고 서로 땡기더라고 주고받고. 내가 문책하기도 싫고 징계주기도 싫어서 내버려뒀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재개발 면적이 얼마나 줄어든 줄 알아? 뭐 사선거리 이런 거 다 남들은 징계에 회부시키라고 하는데 차마 그럴 수 없으니까 서류를 놓고 다 붙들어다가 얘기시키니까. 이건 현장을 안 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라고. 도면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줄 수밖에. 그래서 그걸 직원들이 잘못했다고 나무라는 게 아니라 이 제도 자체를 고치려고 여쭙본 겁니다. 이 점 연구를 하시고 청장한테도 우리 구만이라도 특수지역은 구분하자고 건의를 해보세요. 그리고 都市計劃課長님! 도시계획 도로확장 미 실시된 게 10년이나 된 게 많아요. 왜 이걸 묻느냐 하면 '97년도에 서울시에서 존폐여부를 용역을 취 가지고 조사한 걸로 알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다른 데도 그렇겠지만 제가 아는데 천오동~성북동으로 해서 평창동 그리고 우리 신영동 오거리 서부전선으로 가는 군사도로를 만들려고 박정희 때 군사도로를 만든 거야. 그랬는데 우리 신영동은 어느 해인가 도로계획선이 없어져버렸어. 그래서 집들이 다시 지어졌고. 그런데 평창동 알파화학에서 삼양약품인가 그 앞 로터리지 그리고 성북동 그 밑에까지는 도로가 확정됐어

요. 이 터널 못 뚫어. 청와대 뒷길이다 어찌구 그래 가지고 이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폐지해달라고 건의를 했더니 용역이 나왔더라고. 그런데 존재해야 한다고 결정이 났네. 그래서 '98년도 초에 다시 서울시에서 건의를 올렸어요. 이러한 도로는 차라리 도시계획선을 없애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98년도에 서울시에 다시 올렸는데 먼저 과장님 바뀌고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그 다음에 삼청동에서 팔각정 올라가는 이쪽 거기도 박정희 대통령이 지하터널로 그어놓은 거야. 그래 청와대 주변이라고 또 안돼. 지금도 산꼭대기에 그선이 그어져 있거든. 집도 못 짓고 수리도 못 하고 애로사항이 많아요. 평창동 로터리 부근은 방 하나에 3,000만원짜리 전세가 지금 1,000만원에도 안 나가고 지금 비어있어. 집이 다 무너져가지. 여기 局長님도 계시네. 뭐 현지개량해라. 그럼 가장자리 벽돌 쌓아서 늘리면 또 몇 평 늘렸다고 벌과금 부과하지. 동장한테 얘기해봐라 그러면 동장은 내가 왜 책임지냐? 이번에 동감사 나가면서 동장한테 요만큼이라도 재량권을 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재량으로 해라 그래놓고 잘못하면 징계하고. 우리 주택과, 건축과 책임 안 지려고 그러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정비과장님은 이런 도로가 많은데 이렇게 연결이 됐던 도로를 중간에 자르고 자르고 한 것은 한쪽은 폐지하고 한쪽은 남겨놓고 한 이런 불합리한 것은 어렵겠지만 작년에 건의서는 또 넣고 금년 지나고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2000년도에도 새롭게 한번 거기에 대한 일을 추진을 좀 해주십시오.

○都市計劃課長 張東祐 알겠습니다.

○玄壽漢委員 住宅課長님! 아까 '99년까지 한시법을 악법이라고 시인하셨어. 그런데 이게 그 조항만 빼버리고 국회에서 결정되어 통과된 사항입니까?

○住宅課長 李宗哲 지금 예고된 상태입니다.

○玄壽漢委員 그러면 주택과장이 몇십 년 주택업무에 계셨는지 몰라도 제가 아는 동네만 얘기할

게요. 교남동, 무악동, 명륜동, 창신2동, 명륜3동 등 말도 못해. 현장에 가보시면 알아. 이거 지어 놓고 아까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이거 5년 내, 10년 내에 다시 재건축 해야돼. 이것을 철폐하는 데 뭐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질문드리면 또 한가지 그거는 지금 이 시간 이후에도 이걸 한시법을 아주 폐쇄해야 된다는 쪽으로 기울어져야해. 이게 아주, 한번 가보세요. 저는 의원 생활한지 10년도 넘으니까 20여 개 동을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몇 년씩 둘러보고 해가지고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도 몇 년씩 하다 보니까 지금 청진구역 무슨 구역 다 제 손 거친 겁니다. 19개 블록별로 다 자르고 종로구청 새청사건립추진위원으로 초창기 빼고 '91년부터 매달린 겁니다. 왜 우리 鄭興鎮 區廳長이 집행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독촉을 해도. 우리 住宅課長하고 建築課長! 거기에서 내가 우리 종로구 청문회장을 만들려고 해. 거짓말들을 하도 잘해서. 1시간 전 얘기하고 1시간 후 얘기하고 말이 달라져. 우리 課長님들께서. 오늘은 순수하게 잘 하시는데. 住宅課長님! 삼일아파트는 아까 업무보고에 재추진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공문을 주택에서 동으로 내려보낸 걸 보니까 '99년 3월 30일자인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돼버렸어. 다 쓰러져 가는 건물 어떻게 하려고. 그거는 거기 안 전문제도 있고 수돗물도 안 나온다고 그래서 민원 받은 일이 있는데 우리 都市整備課長님이 그거 재추진을 서둘러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住宅課長님하고 建築課長님께 말씀드릴 건 그거 서너 평 무단 증축했다면 이걸 없는 사람이 지은 거야. 그런데 동대문 바깥쪽에 나가니까 그쪽에 무허가 증축물이 무지하게 많은 곳인데 이 자리에 같이 계신 우리 委員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에 덮어두려다가 합니다. 무허가대장 보니까 45평짜리가 있어. 33평짜리가 셋이야. 10평 미만은 없어. 제일 적은 게 10평이야. 다른 동네 2~3평 창고 하나 늘리고 방 조금 넓히려고 그런 거는 강제철거 이행강제금을 물립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거 한 서너 평 이런 거는 봐주고 뭘 철저히

단속하느냐 하면 용도변경, 신축해서 주차장 만들어놓고 대부분이 방으로 가게로 둔갑해 버리던데 그거 단속은 안 하던데. 그런 거를 부탁드리면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주택과장한테 여쭙보려고 합니다. 아까 이행강제금을 연1회 할 수 있다고 지정이 돼있다면서요?

○住宅課長 李宗哲 2회 할 수 있다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玄壽漢委員 그럼 우리말 한번 바꿔야겠네. 없다고 해도 되는 얘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건 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냐?

○住宅課長 李宗哲 해야한다 하는 것은 강제규정입니다. 2회를 적용해야 하고 2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2회를 할 수도 있고 1회만 할 수도 있습니다.

○玄壽漢委員 2회 할 수 있다라는 말은 2회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말 아니야?

○住宅課長 李宗哲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玄壽漢委員 공무원들 재량 아니야 그게. 할 수 있다를 아니 내용 보니까 할 수 없다. 그래서 안 했다. 이게 아까 다른 委員님도 말씀하셨지만 꼭 없는 사람, 법을 어기지 않고 살려는 사람들한테만 계속 되고 아까 말씀하셨죠? 1~4가, 주로 3~4가야. 거기 철근으로 몇 층 올라가던데 이행강제금 분기별로 3,000만원씩 매겨도 끄떡도 안 해. 세 받는 게 더 많다. 거기 가서 무허가건물 단속 못 해가지고 오는 놈은 돈 먹고 왔대 우리 委員들이. 의원들 중에서도 그래요. 이게 형편에 안 맞는 단 말이야. 차고를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아예 정식으로 하지 않고 다른 걸로 써먹으면 그건 과감히 매겨버려.

○建築課長 李漢求 그거는 교통지도과에서 연1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玄壽漢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단독주택이지? 단독주택에 한두 개 주차장 만들었다가 그게 점포나 방으로 둔갑한다는 말이야. 이거는 철저히 단속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얘기지. 그 다음 綠地課長님! 지난번 책도 발간하시고 다는 못

읽어봤지만 애로사항 그거 감명받았습니다만 요새 겨울준비 하시는데 나무나 묘목들 집단으로 싸고 있는데 그게 공공근로자예요? 수목전문직 사람들이예요?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대부분 공공근로자입니다.

○玄壽漢委員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설피게 싸가지고 나무가 겨울에 동상 안 걸리고 살아날까?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짚이 좀 두껍기 때문에

○玄壽漢委員 아니 싸는 데 가봤소? 한 댓 명 남녀가 어정쩡하게 다니면서 두어 사람은 붙들어 매고 나머지 사람은 짚 요만큼씩 주고 한참 그 일을 하는데 그 공공근로자 임금은 얼마나 돼요?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2만 3,000원입니다.

○玄壽漢委員 하루 몇 명이나 써요?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한 40~50명 씩입니다.

○玄壽漢委員 그 사람들 해가지고 될까? 공원 내에는 전문인이 섞여있는 걸로 아는데 인왕산길이나 북한산길 하는 거 보면 늙은이들이 또 몰라 늙은 사람들이 더 잘 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나베들이 거기 켜 가지고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앞으로는 일반인들을 불이도록 하겠습니다.

○玄壽漢委員 나무들 다 죽으면 課長이 책임지겠소?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죽지는 않아요.

○玄壽漢委員 공공근로요원을 10명이든 5명이든 투입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전문인이 하나씩은 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따라가서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거 나갈 인력이 없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렇더라도 그거 할 때 전문적인 사람이 하나 따라붙어 가지고 10여 명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 시키고 저기 시키고 감독하는 게 낫지 않나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알겠습니다.

○玄壽漢委員 금년에 이미 시작한 건데 어쩔 수 없고 다니면서 보면 참 어려운 게 있어요. 오늘 과장님들은 그래도 솔직하게 답변하셨는데 委員長님! 제가 끝나는 날 대질심문을 해야 되겠어.

말들이 전부 엇갈리고 아까 여기 하나 지적해 드릴 게 있는데 160페이지 무허가건물에 대한 철거대집행 개보수 발부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발부건수가 10건, 철거 7건, 고발 1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동에 감사 나가니까 금년에 발생하고 주택과에서 보고해서 철거한 것만 해도 열 몇 건이야. 45평짜리 35평짜리 이런 거. 그런데 이런 보고는 몇 월 며칠 현황을 한 겁니까?

○住宅課長 李宗哲 이거는 개보수를 발부하고 저희들이 강제 집행한 겁니다.

○玄壽漢委員 이게 금년 거죠?

○住宅課長 李宗哲 일반적으로 시정지시를 하고 그 당시 현장근무를 하고 있을 때는 즉시 나가서 제재를 합니다.

○玄壽漢委員 아니 그 동네가 잘 되고 무허가 발생 적출했다고 그러네? 그 사람 이름까지 내가 다 써놨는데 주택과에 보고해서 주택과에서 강제 철거했다고 되어 있더라구. 거기에 담당 계장, 동장까지 사인이 있더라구. 그래서 내가 현장을 안 가봤습니다. 왜? 동장까지 사인했으니까 내가 믿고 안 가보겠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거기 한 동네 건수 반도 안돼.

○住宅課長 李宗哲 그건 저희들이 집계 내는데 무허가건물 철거된 숫자가 다 포함된 게 아니고 우리가 강제대집행 법적인,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강제대집행 한 게 10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玄壽漢委員 아니 감사자료를 보고 할 때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날짜도 빠진 게 있고 몇 년 몇월 며칠까지다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물어보지도 않아요.

○住宅課長 李宗哲 숫자에 보면 아마 현재가 안 빠져 있을 겁니다. 10월말 기준으로 작성했는데 자료에는 날짜가 좀

○玄壽漢委員 21개 동에 이게 무허가가 일만데 이 숫자를 보면 안 물어볼 수가 없잖아. 이런 것도 앞으로 시정해야 돼요. 동을 나가도. 동은 왜 확실하게 대조할 수 있느냐 하면 이렇게 슬쩍 보다가 잘못됐으면 장부 가져오라면 금방 가져와.

대조 해본다고. 그런데 구청 감사는 이거 가져오려면 이것밖에 없는데 이걸 물어봐야 된다고. 가져오려면 한두 시간씩 걸리고. 자료가 작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 그런 것도 정리하고 제가 마지막 끝내면서 각 국과장들 대질심문을 해봐야겠어. 오전하고 오후 얘기가 다르고 이 과, 저 과 얘기한 게 전부 달라. 그래서 국회에서 청문회가 있는 모양이야, 내년도에는 우리 종로구의회도 청문회 그걸 좀 만들어야겠어.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弼根 玄壽漢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公園綠地課長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꼭 짚으로 싸야 합니까? 제가 이번에 중국을 가서 봤더니 나무에 전부 하얀 페인트칠을 했더라구요. 한 1m 정도 해가지고 나무에다가. 그것을 매년 이렇게 쌀 필요가 없고 인력낭비가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잘 알아보셔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해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委員長 吳弼根 玄壽漢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金以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以煥委員 金以煥委員입니다. 하루 종일 고생들이 많습니다. 지금 낙산근린공원 복원하고 있죠? 우선 거기 공원을 만드는 계획서가 다 나와있습니까?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대략은 있습니다.

○金以煥委員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보상문제는 몇%가 되어 있으며 보상은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먼저 답변에 앞서 가지고 金以煥委員님께 감사 표시를 드립니다. 상당히 낙산에 대해서 어려운 일을 시청 시장님까지 동원하셔서 거의 해결을 봤다고, 확정이 될 정도로 되다시피 한 사항도 있어요. 낙산보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낙산 고적지 성곽을 위주로 해서 옛날에는 무허가건물이 많이 전쟁과 해방 직후에 들어서 임야가 훼손돼 가지고 토사라든지 이런 게 많이 흐르고 오수나 하수관이 작고 크고 해가지고 상당히 밑에 있는 기존 주택까지 문제가 있는 그

러한 원인행위 지역입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낙산지역을 공원용지로 묶어 가지고 개발에 본격적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금년도에 약 180억 정도 예산이 투입돼서 철거도 하고 있고 토지보상이나 건축물 보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부터 하고 있는데 녹지과에서 현재 하고 있는 업무는 이 업무는 시에서 해야 되는데 시의 여건이나 형편상으로 봐서 시에서 집행을 못한 게 있습니다. 보상업무 같은 건 시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은 우리가 확보해 가지고 우리 구의 녹지과로 배정이 되면 주택과하고 해당되는 토목과나 과에서 재 배정을 해서 철거합니다. 상세한 내역은 해당 과에서 몇 동 철거를 했는지, 몇 동 보상이 됐는지는 알고 있고 저희는 어느 시기마다 분기면 분기마다 통계는 받는 형편입니다.

○金以煥委員 보상은 무슨 과에서 합니까?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아파트 같은 데는 주택과에서 합니다.

○住宅課長 李宗哲 지금 시민아파트나 공동주택은 주택과에서 하고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토지건물하고 무허가건물도 주택과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金以煥委員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모른다 이겁니까?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상세한 내역은 저희가 파악을 아직 안 했죠.

○金以煥委員 여기서 예산을 타다가 하기 때문에 계획서 자체는 여기서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현재 몇 동 중 몇 동이 보상됐고 철거가 몇 회 됐고 나머지가 얼마 있는데 언제까지 이것을 할 것이다 하는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제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이 내년도까지도 다 안 끝납니다.

○金以煥委員 그런데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가 서면으로 보다 다 알아야 되니까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그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以煥委員 그런 것은 중대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보전사업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전체 예산은 아직 안 나왔어요. 설계 기본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은 저희 구에서 하지 않습니다. 공사는.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우리 課長님! 모르시네? 나도 알고 있는데 모르면 됩니까? 전체 예산이 지금 계획안은 1,500억이라고 알고 있고 거기서도 더 부과해서 약 2,000억 가량 되는 걸로 나도 알고 있는데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당초에는 1,550억이었습니다.

○金以煥委員 왜 이걸 묻나 하면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우리 혈세가 2,000억이라고 하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금을 투자해서 공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종로에서 서울시에서 배려를 해가지고 이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렇게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공원과에서 철저히 그것을 감독도 해야 되고 또 우리 관내니까 시에서 다소 미진한 점이 있으면 우리의 안을 확실하게 항상 연구 검토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기왕 그런 큰 공사를 할 때는 제대로 백년대계를 두고 좋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課長님의 명성도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의례적인 애굽니다마는 어느 정도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과장님은.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깊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金以煥委員 요즘 현실에 최고의 우리 종로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맞습니다.

○金以煥委員 그렇게 생각한다면 최고의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거기에 정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말씀드렸지만 암반지대기 때문에 토사를 너무 많이 적출한다든지 또 보

존가치가 있는 입증된 역사에 관련된 것의 존치라든가 현재 불가피한 노인정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서울시에 가서

○金以煥委員 계획에 뭐가 들어서고 배드민턴장 뛰 이렇게 주차장 이런 저런 시설을 하는 것들도 면만 봐가지고 나는 잘 알 수 없고 그런 부분이 설 자리에 가서 항상 서야 되고 그 사람들이 탁상적으로 이렇게 적당히 해놓은 것을 여기서 관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이러한 부분은 여기다 옮겨서 한다든지 이러한 대안을 시에 복잡하지만 이렇게 자꾸 해가지고 제대로 그것이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를 부탁드립니다.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金以煥委員 그리고 물론 거기 밑에 성곽도로가 있는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우리 이계장님이 자기 최고의 사업으로 알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공원과에서도 처음에 그것을 추진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하려면 도로문제 알고 계시죠? 성곽도로가 사실 유명무실하거든요. 그것을 공원과에서 이렇게 좀 쓰게 하고 밑에다 그 대신에 8m도로를 해야 성도 든든해지고 공원과도 제대로 되고 도로도 제대로 돼서 삼각이 맞아서 백년대계를 놓고 우리 혈세가 정말 제대로 써진다 본 위원은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견해차이가 있어요. 공원사업인데 어떻게 동네 도로를 내주느냐 이런 말을 하고 합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정말 잘못된 얘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또 그 사람들이 산책로라도 도로를 내야 할 것 아닙니까? 산에 올라가려면. 그 동네 입지여건이 주 진입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8m기 때문에 노점상들 다 내려와 버리고 소방차도 며칠 전에 불 났는데 못들어가서 찢찢 땀어요. 앞으로 공원이화가 되어버리면 요즘 사람들은 아무래도 산이라도 도로가 있으면 차량을 많이 이용합

니다. 지금 현재도 딱딱 차서 통행을 못하는 데 거기 공원이 우리 생각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차가 더 많아지면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차가 날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도 최대한으로 도시계획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그것이 꼭 도로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줄 수 있습니까?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以煥委員 최대한으로 이렇게 협조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 완공하는지 완공계획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5개년 계획입니다.

○金以煥委員 5개년이면 언제부터 5년을 말하는 겁니까?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작년부터요.

○金以煥委員 본 위원이 서울시에 가서 본 바에 의하면 내년 8월 30일까지 완공계획이던데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그것은 1차죠.

○金以煥委員 1차라고 하는 것은 중간 어느 지점까지 말하는 겁니까?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토지를 보상을 점차적으로 공원을 조성해가면서 상단부분부터

○金以煥委員 좋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서울시에서 직접 보상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종로구로 내려 보내주면 우리가 안을 올리면 내려 보내주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건설관리과로 보낸다 하셨는데 그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하루속히 이렇게 보상을 빨리 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내년 150억이죠? 150억이 지금 기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거의 보상이 끝납니다.

○金以煥委員 내년도라고 지금 2000년도 1년을 말씀하시는데 2000년도를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상반기나 하반기 최소한도로 여기까지는 완료된다 해야지 내년까지면 내년 12월달까지, 우리가 빨리 할 수 있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시청에서 배정을 그 예산을 한꺼번에 다 주지를 못해요.

○金以煥委員 지금 몇%나 남았어요?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이화동지역 한 20%

○金以煥委員 창신동도 아직 다 끝나지 않았잖아요? 지금 협의하는 사람도 많고 하던데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돈이 현재 있죠. 확보가 되었죠. 70억 배정된 예산 가지고

○金以煥委員 70억 지난번에 해서 가져온 것 아닙니까?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추경 가지고

○金以煥委員 추경이 아니죠. 추경 전에 가져왔죠.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추경입니다. 늦게 가져왔습니다.

○金以煥委員 추경에 타왔어도 지금쯤은 보상이 충분히 됐어야 하는데 이제 조사하면 언제 합니까? 갖다놓은 돈도 그렇게 오래 걸려요?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절차가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以煥委員 거기에 반대하는 분은 없었습니까? 나는 절대 못나가겠다 하고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보상에 반대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金以煥委員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죽어도 안나가겠다는 분이 있는데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아직까지 저희한테 항의 들어온 것은 없고 빨리 보상을 해달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金以煥委員 물론 빨리 달라는 분도 있어요. 그 분들이 더 많은데 죽어도 못나가겠다는 사람들은 극소수죠. 두사람이 그러는 것을 봤거든요. 한사람같은 경우는 참 딱해요. 무허가건물을 짓고 살았는데 땅도 시유지예요. 땅 보상을 못받으니까 건물 보상 받아봐야 몇푼 안되잖아요. 그것이 한 2년 전에 무너지려고 하니까 그때 우리 구청장이 이런 것은 좀 해서 우선 살아야 되니까 불법이지만 이렇게 해서 하고 살아라 그 주변 사람

들한테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수리를 짝 했다고. 고치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수리를 짝 하고 수리하는 데도 돈이 찍 들었다고. 없는 돈에 그런데 이렇게 사는데 오히려 나가라고 그런 단 말이야. 그분이 혼자 사는 분인데 나이도 58 세인가 그럴 거예요. 나는 죽으면 죽었지 못나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안을 세우고 계십니까?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그 집을 남겨둘 수는 없고요 제일 늦게까지 기회를 줘야죠. 결국에는 그분에 대한 동정심은 갑니다. 심정은 이해하는데 공익 전체로 해서 소가 어차피 미안하지만 희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법에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상을 해주고 그 안에 나갈 수 있는 기간을 그런 사람한테 제일 철거를 나중에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金以煥委員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분들 어떻게 보면 눈물이거든요. 관심을 갖고 우리 쪽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수 있는 대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다소라도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하나 물었습니다. 우리 지금 종로구에서 금년에 건축한 건수가 전부 제가 안봤는 데 몇건이나 됩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올해 10월말까지 허가가 156 건이고 사용승인이 120건입니다. 전체가 276건입니다.

○金以煥委員 전체가 276건 거기에서 위반된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건축법을 위반한 것은

○建築課長 李漢求 위반된 것이 16건입니다.

○金以煥委員 그것밖에 안 됩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여기 분기별로 상설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준공되었거나 착공된 것에 대해서 3개월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올해부터서는 교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00%. 딱 구청에서 와서 우리 것을 하고 우리 구청에서 다른 구청에서 가서 하고

○金以煥委員 그러면 정확한 통계는 금년 숫자는

안 나오겠네요?

○建築課長 李漢求 대행업무 상설점검 25페이지 보시면 적출된 것이 1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以煥委員 그러면 위반된 건수를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위반된 것 처리현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적발이 되면 지금 공사중인 것은 막바로 감리자 조치 의뢰하고 시정지시가 나옵니다.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2차 시정지시를 보내고 그 다음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에 들어갑니다.

○金以煥委員 그러면 당사자한테는 그러한 벌이 가고 그것을 시공한 감리자라든가 그러한 사람한테는 어떠한

○建築課長 李漢求 감리건축사는 우리가 적발이 되면 막바로 보냅니다. 소속되어 있는 구청으로 조치해달라고 보내고

○金以煥委員 위반된 건축주 말고 건축주가 처벌받으면 감리자도 거기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겠죠? 어떤 벌을

○建築課長 李漢求 그것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건축사업법 시행규칙 뒤에 보면 처벌규정이 쪽 나오는데 위반에 따라서 처벌이 3개월, 2개월, 6개월, 8개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적발을 하면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해가지고 여기에 해당된다 해가지고 처벌을 의뢰합니다. 건축사는 저희가 안타까운 것은 지금 말씀하신 시공자, 착공할 때 시공자는 따로 있으면 착공지에 시공자가 따로 있다고 해주시면 되는데 실제 시공자가 따로 있는데도 건축주가 내가 공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착공계를 제출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처벌할 게 없습니다.

○金以煥委員 건축주가 시공을 해도 감리사가 감리를 해야

○建築課長 李漢求 감리사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막바로 우리가 위법이 있다고 하면 처벌 의뢰합니다. 우리 구청같으면 우리 구청 소속 건축사 같으면 저희가 처벌하고 딱 구청이면 처벌 의뢰합니다.

○金以煥委員 감리사 따로 하고 설계사 따로 하고 그렇습니까? 한사람이 이것저것 말씀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감리나 설계나 다 건축산데요 설계를 건축주가 의뢰할 때 설계하고 감리까지 의뢰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설계만 의뢰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만약에 설계만 의뢰한다면 설계 도서만 작성하고 허가로 끝나고 감리건축사는 다른 사람을 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한사람이 다 할 수도 있고

○金以煥委員 그렇게 되어 있는 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과장님이 볼 때 이것은 잘 되어 있는 것이다 아니면 잘못됐다 이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문가로서.

○建築課長 李漢求 그 말씀하시는 취지가 설계한 사람이 감리해야 된다는 취지인지 그렇지 않으면 감리하고 설계를 분리해야 된다는 취지인지 잘 못알아 들어 가지고.

○金以煥委員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제도는 건축주한테 상당히 불편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 이러한 것도 건의해서 수정할 수 있는 길을 한번 터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委員長 吳弼根 金以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吳錦南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錦南委員 吳錦南委員입니다. 조금 전에 金以煥委員님 질의에 설계사와 감리가 한 회사일 경우에 같이 맡아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建築課長 李漢求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다시 정할 수도 있고

○建築課長 李漢求 건축주가 계약할 적에 설계만 계약을 하면 그 사람은 허가 내는 것으로 끝내고 감리를 다른 사람을 계약할 수도 있고 한사람이 설계, 감리를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吳錦南委員 간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나가시네요. 우리 계장님 대답하셔도 괜찮으시겠어요? 다른 것 먼저 하겠습니다. 미준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m 도로, 4m도로 그 좁은 2m, 11.5m 예를 들어 1.5m나 2m 이러한 도로 안에 집을 짓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집을 지을 적에 지금은 법이 그래도 강한 편이지만 과거에 지은 집들은 건물주가 '나 이것 좀 늘려주라, 이것 조금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면 건축하는 사람이 말하자면 시공자가 조금씩 늘려줍니다. 이래도 되겠지, 되겠지 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이제 추가로 공사비가 첨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첨부가 되다 보면 나중에 준공검사 날 적에 브레이크가 걸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이 소도로 아주 좁은 도로에 서민들이 사는 곳에 미준공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이웃집에 어떤 민원이 없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준공을 해줄 수 없습니까? 소도로에 이웃집과 민원이 없고 정말 2m도로 안에 지어진 집들

○建築課長 李漢求 그것은 건축사가 감리자가 소규모 건축물은 현장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준공은 특히 아무리 큰 건물도 현장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건축사가 맞다고 해도 그 전 같았으면 준공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8월 1일 이후에 허가되었거나 준공된 것에 대해서는 다른 건축사가 와서 하기 때문에 그 이전 것은 괜찮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감리자가 다 맞소 해가지고 오면 준공처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서 걸렸든지 이러한 것은 저희가 현장을 보거든요. 현장을 봐서 위법사항이 나왔는데 그 위법사항이 시정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지금 짓고 있는 것 같으면 건축사가 이렇게 시정이 되었습니다 하고 사진 첨부시켜서 그렇게 하면 그것을 완료처리 해주고 준공을 해줍니다.

○吳錦南委員 그런데 설계사나 감리사의 어느 한 문건을 서민들의 주택 문건을 가지고 그런 예를 우리 동네에서 봤습니다. 문건을 갖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던 것이 3, 4년이 걸립니다. 그것은 건축주 어떻게 혼자 살다보니까 집을 늘려줬으면 하고 그런 생각에 짓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서로 책임을 안지려고 설계사는 감리사, 감리사는 설계사 이리다 결과적으로 준공이 안나 가지고 그 집주인은 시공사 돈 때문에 그 집이 결과적으로 매매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서민들한테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 감리사한테 구청 자체에서 맡겨버리면 물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영원히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계사나 감리사의 서민들이 건축하는데 상당히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되시고 물론 건축법 23조라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18조로 알고 있습니다. 18조 사용검사 제도에 의해서 구청직원은 못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법적으로 나가지는 못한다니까 서민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연구를 많이 하셔서 시에나 건교부에 질의도 하고 앞으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建築課長 李漢求** 알겠습니다.

○**吳錦南委員**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물겠습니다. 세종로 국민카드 소공원을 계장님한테 몇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다 수목 조금 심고 어린이놀이 터 조그맣게 만들어주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안되고 있어요. 1년이 넘었습니다. 이것 좀 한번 살펴보고 또 각 동장님들이 때 따라서는 소공원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꽃길을 조성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잘 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예, 저희가 다 해줍니다. 얻어다 해준 겁니다.

○**吳錦南委員** 저희 동이라고 해서 동장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기주 동장은 사직동 H차담벽같은 데도 꽃을 심고 주민들이 와서 꽃을 심게 하고 그 지역에 화분도 들여다 놓고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열성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보고를 받고 계시나 하고 제가 묻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토목과하고 상의할 문

제가 되겠습니까마는 지금 가로수 15년 내지 20년 된 은행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근 20년 정도로 도로 낸 데 그러면 지름으로 한 30cm, 40cm 정도로 나무가 커져 있습니다. 그 밑에 보호틀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보호틀은 지금까지도 바꾸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는 바꿨겠죠. 자료를 보니까 바꿔주지 않고 또 나무가 크다 보니까 뿌리가 왕성해지잖아요. S자 보도블록을 깔아놓은 자리가 파도를 치고 있습니다. 인도가요. 이것을 토목과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죠? 상의를 하셔서 그 보조틀하고 같이 토목과하고 얘기해서 시정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것이 지적이 되셨는데 아직까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데 좀 살살이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나무 파쇄기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파쇄기는 고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마다 옮겨가면서 파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지금 창신3동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금년도에 사직공원에 국민식수 했던 데 거기 밑에 거기다 갖다놓고 파쇄하고 여기 저기 옮겨다니면서 합니다.

○**吳錦南委員** 지금 창신3동에 있죠? 거기에 나무 파쇄기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거기는 저희는 안갖다 놓았는데요.

○**吳錦南委員** 청소과에서 합니까?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아니요, 파쇄기는 저희밖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吳錦南委員** 창신3동에 있는 줄로 아는데 그러면 한번 살펴보세요. 창신3동에 파쇄기로 해서 나무를 많이 파쇄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거기 하수구가 막히고 시설이 아주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그 자리에 포장도 좀 해주시고 나무 파쇄기 하면 쓰레기도 좀 치워주시고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거기에 동 행정사

무감사를 가보시고 아주 상당히 혐오감을 느끼셨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쪽에 한번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일반 파쇄기 아닌가요?

○吳錦南委員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파쇄기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吳錦南委員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닌가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저희 소관이 아니더라도 해당 과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가지치기를 1년에 한두 번씩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지역에 민원이 들어오면 하게 됩니까?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고정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낙엽이 지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잎이 피기 전까지 고정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여름철 같은 때 잎이 넓어지면 실지 잎이 없을 때 머리 닿거든요. 그런 것은 여름에 두번 하고 있고요 고압전선에 가로수가 닿는 게 있어요. 고압전선 공장이 다 서게 되거나 나이론 공장같은 데 서게 되면 기계 다 들러붙거든요. 그러한 지역은 한전으로 하여금 승인을 해주고 입회만 해서 모든 돈은 한전에서 해서 못하게 잘라주고 있죠. 은행나무는 완전히 전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슈아내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버드나무같은 경우는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인도 생각을 하고 그 심정을 이해할 거예요. 간판도 안보이고 하니까 누가 봐서 말썽 없을 정도면 슈아주는 해주고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은행나무는 예를 들어 가지치기를 하면 그 나무에 피해가 갑니까? 예를 들어 가로수에 있다 하면 건물로 뺨치는 것 있지 않습니까?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돌출한 가지는 잘라주죠.

○吳錦南委員 나무에 어떤 피해가 가느냐 이거죠? 생육에.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가지가 재생이 더딥니다. 버드나무같은 경우는 몇m씩 자라지만 은행은 한번 자르면 그 몽둥이만 남죠. 가지가 몇년 지나야 조금 나죠.

○吳錦南委員 본 위원이 중구쪽을 많이 갑니다. 하루에 한번씩은 그쪽으로 지나는데 가지치기를 초봄 될 적에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수목이 우거질 무렵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구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고 지금 현재 청운동 올라가는 경복궁 역에서 오른편쪽에 그쪽에도 단층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은행나무 심어진 쪽에 주로 거기에 개인주택으로 뺨쳤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해달라 얘기를 해도 잘 안되고 또 동사무소쪽으로 올라가는 쪽에도 오른편쪽에 해달라 해도 잘 안돼요. 그래서 은행을 가을에 딱 적이 있죠? 그 분들이 일부 좀 잘라줘서 모면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계장님한테는 몇차례 얘기했는데 시행이 안됐습니다. 계장님 계시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전 공원계장님이 안 계시니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팔각정공사를 공원녹지과에서 하셨죠?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네.

○吳錦南委員 거기에 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물론 구 예산 시 예산이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우리 종로구에서 관리하는 것만큼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하니까. 그럼 거기 깃대봉이 몇 개 만들어져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태극기 하나만 꽂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그쪽에 사시니까 정부에서 못 하게 해서 그러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우리 종로구에서 관리하면서 종로구기가 없다 이거예요. 시설할 때 3개 하든지 2개 하든지 해서 우리 나라 국기가 걸리고 다음에 종로구에서 관리하니까 종로구기가 걸려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걸려 있어요. 몇 번 가서 보고 이제나 걸리나 저제나 걸리나 봐도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참작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네. 공단에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리고 광고 얘기인데요 똑같은 간판 규격 크기인데 허가를 내면 얼마고 만약에 무허가로 되어 있을 때 부과금은 얼마입니까?

○都市計劃課長 張東祐 그거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로 1㎡당 8만 8,400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원 허가를 낼 때에는 100%에 해당하는 면적에다가 곱하기 8만 8,400원을 하면 되겠구요 그 다음 불법으로 할 때는 120%입니다. 8만 8,400원에 면적 곱하기 1.2 하면 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아니 간판 허가를 도시계획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30cm는 얼마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달라는 얘기죠.

○廣告物管理擔當主事 鄭東賢 關係官席에서 - 도로점용료는 도로를 점용할 때만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사유지상은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일단 점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부과하고 점용료는 도로법에 의해서 1㎡당 8만 8,400원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작년 8월 달에 바뀌었고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무허가에 대해서 부과예고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120%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허가를 내줄 경우는 허가에 대해서 100% 부과하고 무허가일 경우 120% 부과하고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아니 가령 이런 간판이 있는데 전면간판은 다 하나씩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하는데 허가 내는 건 얼마고 점용료는 건설관리과라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서

(○廣告物管理擔當主事 鄭東賢 關係官席에서 - 네. 허가수수료는 규격에 따라 다릅니다.)

○吳錦南委員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cm 짜리는 허가는 얼마고

(○廣告物管理擔當主事 鄭東賢 關係官席에서 - 도로점용료는 빼고 허가수수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수수료는 6㎡ 미만은 2만원입니다. 돌출일 경우에. 가로간판은 4,000원입니다. 1㎡당. 그러니까 토탈 허가하는데 3만 5,000원이 듭니다.)

○吳錦南委員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점용료를 받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

○廣告物管理擔當主事 鄭東賢 아니 모르는 게 아

니고 부과기준은 그렇습니다.

○吳錦南委員 그러니까 별 차이가 안 나는 거 아닙니까? 20%밖에.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가 자꾸 성행이 된다는 제 의의는 그겁니다. 무허가 간판을 했을 때 무게가 나가면 쉽게 얘기해서 간판비는 8만 8,400원인데 무허가일 경우는 똑같은 간판이 20만원을 낸다면 허가를 낼텐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무허가간판이 성행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都市計劃課長 張東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계속 매기고 있습니다. 큰 거에 해당하는 거는 50만원까지 매기고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우리 4계課長님들한테 물겠습니다. 장시간 고생들 하셨습니다만 여러委員님들도 고생하셨는데 어느 공사가 있을 때에는 우리綠地課長님하고 都市計劃課長님은 저한테 꼭 공문이 옵니다. 그런데 일부 과장님께서서는 동네에 무슨 공사를 하는지도 몰라요. 議員들이. 동장도 몰라요. 그러면 동네 무슨 공사를 하느냐 하는 것을 알려면 현장에 일하는 데 가서 물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들은 특별히 각 지역 의원님들한테 아니면 동장님들한테 통보하셔서 어느 지역에 며칠날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을 통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민이 무슨 공사요 물으면 대답할 수가 없어요. 지금 경복궁에서 효자로 평창동 나가는데 토목공사인데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어요. 뭐하냐고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래요. 의원도 전혀 모르고 동장도 몰라요. 중간에 경계석도 깔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공사들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들께서는 지역 의원님들한테 꼭 그걸 통보해주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弼根 吳錦南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다음은 金福同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福同委員 253쪽이요. '99년도 예산집행 현

황 총 7건에 대해서 4억 1,806만원인데 그런데 공
원유지관리보수비 7,000만원 집행하셨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해서 250만원 집행하셨고 공원 내
수목생육환경개선이라고 해서 3,000만원에서 2,774
만 1,000원 집행하고 225만 9,000원이 남아있습니
까?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낙찰액입니다.

○金福同委員 낙찰액? 이거 공사를 했다는 말
입니까?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네.

○金福同委員 알았습니다. 그 다음 吳錦南委員
님께서 말씀하신 데 저와 동감되는 얘기가 있기에
말씀드립니다. 가로수를 보면 은행나무도 있지만
은사시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이 은행목은 여름에
많이 퍼서 먼지같이 솜털이 날리지 않습니까?
초봄에 전지를 하면 솜털같은 게 날리는 양이 엄
청나게 적어요. 금년에 시험을 해봤습니다. 일찍
전지하면 솜털이 날리지 않고 상당히 맑은 공기를
제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전지를 안 해주
다 보니까 옷자라 가지고 비가 오고 가로수가 지
니까 나무가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무거
워서 뿌리가 견디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다가오는 새봄에는 우리 대학로 주변도 그렇고 옷
자란 은행목에 대해서는 전지를 과감하게 해주십
시오. 완전히 옷자란 나무 때문에 주위의 상권을
많이 잃고 있고 근처 사업하시는 분들이 간판을
가린다는 원성이 많습니다. 이 점 과장님 기억하
고 계시다가 초봄에 해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알겠습니다.

○委員長 吳弼根 金福同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
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局長님이 공석 중인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감
사에 임해주신 李宗哲 住宅課長님! 張東祐 都市

計劃課長님! 李漢求 建築課長님! 金乙震 公園綠
地課長님! 委員長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張東祐 都市計劃課長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
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간판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
기로는 도시계획과장님께서서는 본청에서 근무를
하셨고 상당히 엘리트 과정을 거칠 과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선진국을 견학했다고 하면 좀 그
렇습니다만 제가 미국이나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우리 나라같이 간판이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혹시 都市計劃課長님! 선진국 간판에
대해서 다녀보신 적 있습니까?

○都市計劃課長 張東祐 외국에 나가본 적 있습니
다.

○委員長 吳弼根 그렇습니까? 미국이나 후진국
인 중국까지도 입간판이 없습니다. 간판 딱 하나
씩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엘리트 과정을
밟으신 과장님께서 또 우리 鄭興鎮 區廳長님이 특
별하게 픽업을 해서 종로구청으로 오신 걸로 아는데
과장님이 근무하고 나서 더 도로에 무단 입간
판이 많이 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리고 혜화동에 가봐도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도
로에 설치해놓은 입간판 때문에 저녁에 다닐 수가
없어요. 도로를 전부 입간판이 막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단속
을 해서 시정을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都市計劃課長 張東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는 저희 과가 아니고 건설관리과에서 하
기 때문에

○委員長 吳弼根 그래요? 그리고 간판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좀 해주세요. 간판을 뒀 수 있는
대로 1개 건물에 하나씩 해주십시오.

이의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오늘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
러분께서는 12월 3일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
감사가 있으니 오전 10시까지 모두 이 자리에 참
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종로구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時07分 監査終了)

○出席委員 9人

吳弼根 崔康洵 吳錦南 玄壽漢
丁炳煥 李炯述 金福同 金以煥
宣相善

○出席專門委員

蔣昭秀

○出席關係公務員

都市計劃課長 張東祐
住宅課長 李宗哲
建築課長 李漢求
公園綠地課長 金乙震
廣告物管理擔當主事 鄭東賢